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개 황

II.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일반회계	7
가. 세 입	7
나. 세 출	11
(1) 총 관	11
(2) 이 용	15
(3) 전 용	15
(4) 이 월	17
(5) 불 용	18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19
가. 세 입	19
나. 세 출	20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
4. 재무결산	22
가. 재정상태 분석	22
나. 재정운영 분석	23
다. 순자산변동 분석	24

III.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

1. 세입 예산(과태료·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	25
-----------------------------------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무인사기획관실〕

1.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7111-262)	30
가. 개 요	30
나. 행사 관련 예산 적정 편성 및 세목조정 최소화 필요	31
다.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 개선 필요	36

〔미래치안정책국〕

1. 피복관리(4231-313)	38
가. 개 요	38
나. 경찰 피복 구매 계약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39
2. 장비관리유지(4231-314)	43
가. 개 요	43
나.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매 계약 해지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필요	44
3.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48
가. 개 요	48
나. 현장 수요에 맞는 차량 구매를 위한 편성단가 조정 필요	49

〔경찰인재개발원〕

1. 경찰인재개발(4132-311)	52
가. 개 요	52
나. 상시학습현장 교육 세부 프로그램의 임의적 조정 지양	53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55
가. 개 요	55
나.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 운영비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56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대응및재난안전관리(1431-311)	59
가. 개 요	59
나. 운영 실적이 부족한 순찰용 일반자전거 활용 방안 모색 필요	60

〔생활안전교통국〕

1. 교통과학장비관리(1331-313)	64
가. 개 요	64
나. 무인단속장비 구매 수량 및 단가의 추계정확성 제고를 통해 연례적인 불용 지양	65
다. 무인단속장비 운영관련 우편요금 연례적 불용과다	68
2.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72
가. 개 요	72
나. 퇴직적립금 적립비율 제고 필요	75
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실적 개선 필요	81
3. 교통안전활동(1331-312)	84
가. 개 요	84
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85

〔경찰행정지원〕

1. 경찰복지증진(7135-311), 기타잡수입(69-691)	90
가. 개 요	90
나. 경찰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 적정성 검토 필요	91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96
가. 개 요	96
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점검 체계 구축	98
다. 스토킹범죄수사용 차량 유형별 적정 단가 책정 필요	102
라. 진술분석전문가 활용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06

〔경비국〕

1. 의경대체지원(2131-314)	111
가. 개 요	111
나. 유류비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개선 필요	112
다.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지연 등	115
2. 대테러상황관리(3134-311)	121
가. 개 요	121
나. 제주특공대 차고지 설치 공사 관련 사업관리 강화	12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125
가. 개 요	125
나. 운영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126

I. 개 황

□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경찰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개의 프로그램, 33개의 단위사업, 15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집행되었음.

<2023년도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도>

프로그램 (12개)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 (1100)	범죄수사 활동 (1200)	교통안전· 소통확보 (1300)	치안상황 대응강화 (1400)	사회질서 유지 (2100)	공공안전 위험예방 및 대응강화 (2200)	국가안보 확보 (3100)	전문경찰 양성 (4100)	치안인프라 구축 (4200)	과학치안 활성화 (4400)	경찰행정 지원 (7100)	회계간 거 래 (전출금) (8000)
단위사업 (33개)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	교통사고 예방	치안상황 관리	경비경찰 역량강화	공공안전 정보활동	외사경찰 활동	경찰대학 운영	경찰장비 현대화	정책연구 개발 (R&D)	본부 인건비	회계간 전출금 (손익)
	사회적 약자 보호	수사업무 정보화	교통행정 전산화				국제교류 협력활동	경찰인재 개발	헬기운용 및 현대화		소속기관 인건비	회계간 전출금 (자본)
							대테러 상황관리	신임순경 교육	경찰유무선 망개선		본부 기본경비	
								수사경찰 전문교육	경찰정보화 기반고도화		소속기관 기본경비	
								우수인재 확보 및 능력개발			치안행정 업무지원	
											행정효율 성증진및 능력개발	
											감사인권 보호활동	
											대국민치안 정책제공	
											경찰복지 증진	

□ 먼저,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 총 2조 7,436억 3,7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2조 6,583억 2,2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853억 1,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경찰청 회계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1,208,657	-	1,208,657	2,743,637	1,462,566	5,019	1,276,051
일 반 회 계	1,125,327	-	1,125,327	2,658,322	1,377,276	5,019	1,276,02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83,330	-	83,330	85,315	85,290	-	25

※ 자료: 경찰청

□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2,086억 5,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21.0%, 징수결정액 대비 53.3%에 해당하는 1조 4,625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조 2,760억 5,1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예산액대비 수납률(C/A)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C/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1,208,657	2,743,637	1,462,566	121.0	53.3	5,019	1,276,051
일반회계	1,125,327	2,658,322	1,377,276	122.4	51.8	5,019	1,276,02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83,330	85,315	85,290	102.4	99.9	-	25

※ 자료: 경찰청

□ 2023년도에는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대비 6.3%포인트 감소함.

<연도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18년도~2023년도)>

(단위: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94.0	100.1	103.2	116.2	127.3	121.0
일반회계	93.4	99.8	102.3	115.6	128.1	122.4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100.6	103.8	112.6	122.5	118.0	102.4

※ 자료: 경찰청

<연도별 미수납액 누적현황(2018년도~2023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999,374	987,111	1,007,033	1,050,399	1,161,566	1,276,051
일반회계	999,350	987,089	1,007,010	1,050,376	1,161,537	1,276,02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24	22	22	23	28	25

※ 자료: 경찰청

- 다음으로,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결산(예산현액)은 12조 5,073억 9,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에 해당하는 12조 3,721억 3,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9,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95억 6,200만원임.
- 2023년도 경찰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2조 4,894억 3,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79억 5,8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2조 5,073억 9,600만원이 되었음.
-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12조 2,863억 1,200백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810억 5,9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7억 6,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경찰청 회계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기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이 용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12,489,438	17,958	-	±25,396	±8,000	12,507,396	12,372,138	25,697	109,562
일 반 회 계	12,401,341	17,922	-	±24,522	±7,435	12,419,263	12,286,312	25,662	107,28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83,330	36	-	±874	±564	83,366	81,059	35	2,27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767	-	-	-	-	4,767	4,767	-	-

※ 자료: 경찰청

□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 98.1%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98.9%임.

<연도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2018년도~2023년도)>

(단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97.2	97.3	98.6	97.3	98.1	98.9
일반회계	98.2	97.3	98.6	97.3	98.1	98.9
특별회계	94.7	92.0	98.0	95.9	94.9	97.2

※ 자료: 경찰청

□ 다음연도 이월액 256억 9,700만원은 계약체결 지연, 원자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제작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전년 179억 5,800만원 대비 43.1% 증가하였음.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2018년도 ~2023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17,047	9,043	31,291	16,429	17,958	25,697
일반회계	17,047	9,043	31,113	16,389	17,922	25,662
특별회계	-	-	178	41	36	35

※ 자료: 경찰청

□ 2023년도 불용액은 전국 관서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것이며, 전년 2,201억 5,700만원 대비 50.2% 감소한 1,095억 6,200만원임.

<연도별 불용액 현황(2018년도~2023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81,367	288,965	133,581	309,791	220,157	109,562
일반회계	277,031	282,530	132,030	306,254	215,754	107,289
특별회계	4,336	6,435	1,550	3,537	4,403	2,272

※ 자료: 경찰청

II.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125,327	2,658,322	1,377,276	122.4	51.8	5,019	1,276,026

※ 자료 : 경찰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253억 2,700만원으로, 2조 6,583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122.4%, 징수결정액 대비 51.8%에 해당하는 1조 3,772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조 2,760억 2,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25,327	1,125,327	2,658,322	1,377,276	5,019	1,276,026
재산수입	3,854	3,854	4,554	4,317	-	237
경상이전수입	1,110,821	1,110,821	2,643,462	1,362,706	5,019	1,275,73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2	4,462	6,286	6,233	-	52
관유물매각대	6,190	6,190	4,020	4,020	-	-

※ 자료 : 경찰청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18년부터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체납과태료 징수를 제고 노력으로 과태료 수납액이 증가하여 122.4%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18년도~2023년도)>

(단위: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93.4	99.8	102.3	115.6	128.1	122.4

※ 자료: 경찰청

- 세입과목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 벌금 및 과태료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초과 수납하였으나, 관유물매각대의 수납액은 미달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납액	세입예산액 과의 차이	내 역
합 계	1,125,327	1,377,276	251,949	
재산수입	3,854	4,317	463	관유물(토지, 건물) 대여료
경상이전수입	1,110,821	1,362,706	251,885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2	6,233	1,771	기타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6,190	4,020	△2,170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매각대

※ 자료: 경찰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1,125,327	1,377,276	1,276,026	251,949	
재산수입	3,854	4,317	237	463	
토지대여료	1,421	982	230	△439	· 토지임대료 수입 감소
건물대여료	1,717	2,233	5	516	· 건물임대료 수입 증가
기타관유물대여료	-	1	-	1	· 기타관유물 대여 수입 증가
기타재산수입	716	1,101	3	385	· 이자수입 증가
경상이전수입	1,110,821	1,362,706	1,275,737	251,885	
벌금및과료	92,312	76,024	0	△16,288	· 통고처분 감소
과태료	969,554	1,228,436	1,060,986	258,882	· 과태료처분 증가
징계부가금	23	158	589	135	· 징계부가금 수입 증가
변상금	118	153	2,549	36	· 체납변상금 징수 증가
위약금	1,738	590	0	△1,148	· 위약금 감소
가산금	36,110	32,290	209,064	3,819	· 가산금 수입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0,966	25,054	2,546	14,088	· 과오지급 반환금 등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2	6,233	-	1,771	
면허료 및 수수료	881	925	-	44	· 시험응시료 수입 증가
수업료	430	532	32	102	· 수업료 수입 증가
기타잡수입	3,151	4,775	20	1,624	· 잡수익 증가
관유물매각대	6,190	4,020	-	△2,170	
기계기구매각대	5,094	3,633	-	△1,461	· 기계기구 매각 감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69	373	-	△96	· 기자재 등 매각 감소
토지매각대	627	15	-	△612	·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감소

※ 자료: 경찰청

- 재산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12.0%에 해당하는 43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은행예치 이자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22.7%에 해당하는 1조 3,627억 600만원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대수 증가 및 공익신고 활성화로 과태료 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39.7%에 해당하는 62억 3,3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잡수익이 세입예산액보다 16억 2,400만원 증가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에서는 세입예산액의 64.9%에 해당하는 40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는바, 기계기구매각대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조 4,01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79억 2,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조 4,192억 6,3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인 12조 2,863억 1,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6,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72억 8,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증 감	이 증 감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2,401,341	17,923	-	±24,522	±7,435	12,419,263	12,286,312	25,662	107,289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보호	12,605	11	-	±215	-	12,616	12,143	-	472
범죄수사활동	372,220	1,101	-	±1,152	-	373,321	368,523	186	4,612
교통안전소통확보	290,993	149	-	±440	-3,712	291,142	278,691	325	12,126
치안상황대응강화	46,430	2,234	-	±245	-	48,664	44,729	2,190	1,745
사회질서유지	129,069	1,489	-	±2,551	-	130,558	124,073	1,159	5,326
공공안전위험예방 및 대응강화	34,619	-	-	-	-	34,619	34,259	-	360
국가안보확보	57,814	315	-	±192	-	58,129	56,226	-	1,902
전문경찰양성	64,771	5,945	-	±424	-	70,716	66,722	2,657	1,337
치안인프라구축	485,427	5,042	-	±114	-3,723	490,469	430,474	17,984	42,010
과학치안활성화	67,418	-	-	-	-	67,418	67,417	-	1
경찰행정지원	10,809,941	1,637	-	±19,189	7,435	10,811,578	10,773,018	1,161	37,399
회계간거래 (전 출 금)	30,035	-	-	-	-	30,035	30,035	-	0

※ 자료: 경찰청

- 이용액은 74억 3,5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전용액은 245억 2,200만원으로 공공요금, 교육기관 인건비,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256억 6,200만원은 방검복 개발 지연 124억 100만원, 전기다목적 순찰차량 생산 지연 25억 7,800만원, 중앙학교 리모델링 공사 지연 23억 8,800만원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1,072억 8,900만원은 차량 유류비 집행 잔액 299억 9,5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72억 9,400만원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2.3%, 2,88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조 2,863억 1,200만원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18년도~'23년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출액	10,232,804	10,673,003	11,176,395	11,639,009	11,997,861	12,286,312
증감액	305,502	440,199	503,392	462,613	358,852	288,451
증감률	3.1	4.3	4.7	4.1	3.1	2.3

※ 자료: 경찰청

□ 세출예산 비목별로는 이전지출이 자치경찰 예산 미편성(시·도 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27.9% 감소함.

□ 전출금 등은 경찰병원 손익전출금 감액으로 전년대비 16.4% 감소함.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3년도	12,286,312	9,686,591	1,853,288	290,397	426,000	30,035
2022년도	11,997,861	9,314,699	1,810,336	402,776	434,113	35,937
증감액	288,451	371,892	42,952	△112,379	△8,113	△5,902
증감률	2.4	4.0	2.4	△27.9	△1.9	△16.4

※ 자료 : 경찰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9조 6,865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8억 9,200만원
(4.0%) 증가하였음.

□ 사업비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 1,299억원 예산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1,125억원 감소하였음.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증 감	
				%
합 계	11,997,861	12,286,312	288,451	2.4
인 건 비	9,314,699	9,686,591	371,892	4.0
기 본 경 비	367,666	396,784	29,118	7.9
사 업 비	2,315,496	2,202,937	△112,559	△4.9

※ 자료: 경찰청

(2) 이 용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74억 3,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용	-	7,435	7,435	-

※ 자료: 경찰청

☐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3) 전 용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245억 2,200만원으로 2022년도 60억 4,400만원 대비 184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전 용	6,044	24,522	18,478	405.7

※ 자료: 경찰청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액 99억원, 교육기관 인건비 부족액 59억 500만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선에 따른 여비 부족액 40억 3,000만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24,522	
공공요금	9,900	· 공공요금 부족
보수	5,905	· 교육기관 인건비 부족
여비	4,030	· 공무원여비규정 개선에 따른 여비 부족
동원급식비	2,020	· 동원급식비 부족
일용임금	1,781	· 청년인턴 임금
기타	886	· 직제개정 추가소요, 배상금

※ 자료: 경찰청

(4) 이 월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256억 6,200만원으로, 2022년도 179억 2,200만원 대비 77억 4,000만원 43.2%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월	17,922	25,662	7,740	43.2

※ 자료: 경찰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방검복 개발 지연 124억 100만원, 전기다목적 순찰차량 생산 지연 25억 7,800만원, 중앙학교 리모델링 공사 지연 23억 8,800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25,662	
물건비	14,921	· 방검복 개발 지연(12,401) 등
자산취득비	10,741	· 전기순찰차 제작 지연(2,578), 중앙학교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 지연(2,388) 등

※ 자료: 경찰청

(5) 불 용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072억 8,900만원으로, 2022년도 2,157억 5,400만원 대비 1,084억 6,500만원(50.3%)이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불 용	215,754	107,289	△108,465	△50.3

※ 자료: 경찰청

-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차량 유류비 집행 잔액 299억 9,5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72억 9,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107,289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29,995	편성, 집행단가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77,294	낙찰차액 및 관서별 소규모 집행잔액 등

※ 자료: 경찰청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¹⁾으로 지정되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특별회계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운용되고 있음.

가. 세 입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손 익 계 정	80,320	81,974	81,949	-	25
영업수입	32,799	29,519	29,499	-	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6,460	6,510	6,505	-	5
전년도세계잉여금	13,985	18,869	18,869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7,076	27,076	27,076	-	-
자 본 계 정	3,010	3,341	3,341	-	-
전년도세계잉여금	49	380	380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961	2,961	2,961	-	-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803억 2,000만원으로, 819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19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자본계정의 세입예산액은 30억 1,000만원으로, 33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액 수납하였음.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나. 세 출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 용	이 용 이 체				
손 익 계 정	80,320	36	-	±874	±564	80,356	78,277	35	2,044
인 건 비	43,182	-	-	-595	-564	42,023	40,584	-	1,439
기본경비	2,733	-	-	+449	-	3,182	3,071	-	111
진료업무지원	25,867	36	-	+263 -122	-	26,044	25,647	35	362
장례식장운영	3,916	-	-	+162 -157	-	3,921	3,789	-	132
공무원연금부담금	4,620	-	-	-	+564	5,184	5,184	-	-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자 본 계 정	3,010	-	-	-	-	3,010	2,782	-	228
기본경비	183	-	-	-	-	183	183	-	-
자산취득	2,827	-	-	-	-	2,827	2,599	-	228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세출예산액은 803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36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03억 5,6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82억 7,700만원이며, 20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자본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30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 8,200만원이며, 2억 2,800만원은 불용하였음.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라 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²⁾.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이체				
계	4,767	-	-	-	4,767	4,767	-	-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제주계정	4,767	-	-	-	4,767	4,767	-	-

※ 자료: 경찰청

□ 2023년도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47억 6,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3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자산	17,421,346	17,813,160	391,814	2.2
. 유동자산	1,215,843	1,308,108	92,265	7.6
. 일반유형자산	16,077,236	16,367,822	290,586	1.8
. 무형자산	90,549	98,980	8,431	9.3
. 기타비유동자산	37,717	38,250	533	1.4
II. 부채	347,959	395,123	47,164	13.6
. 유동부채	42,176	49,693	7,517	17.8
. 장기차입부채	68,939	62,556	△6,383	△9.3
. 장기충당부채	89,554	104,738	15,184	17.0
. 기타비유동부채	147,291	178,136	30,845	20.9
III. 순자산	17,073,386	17,418,038	344,652	2.0
.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	-
. 적립금및잉여금	3,287,423	3,627,942	340,519	10.4
. 순자산조정	6,887,313	6,891,446	4,133	0.1

※ 자료: 경찰청

□ 2023년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총액은 17조 8,13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18억 1,400만원(2.2%) 증가하였는데, 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이 2,905억 8,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부채 총액은 3,95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억 6,400만원 (13.6%)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151억 8,400만원 증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신규 BTL 임대료장기미지급금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308억 4,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7조 4,180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46억 5,200만원(2.0%)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분석

<2023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A)	2023년도 (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581,419	1,479,560	△101,859	△6.4
가. 프로그램총원가	1,618,673	1,515,392	△103,281	△6.4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7,254	35,832	△1,422	△3.8
II. 관리운영비	11,962,061	12,401,048	438,987	3.7
III. 비배분비용	7,121	939	△6,182	△86.8
IV. 비배분수익	88,123	55,165	△32,958	△37.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3,462,477	13,826,382	363,905	2.7
VI. 비교환수익 등	167	233	66	39.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3,462,310	13,826,148	363,838	2.7

※ 자료: 경찰청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 인바, 2023년도 재정운영결과는 13조 8,26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인 3,63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가 4,389억 8,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4,795억 6,000만원이었음.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13조 8,26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인 3,63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2023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16,641,046	17,073,386	432,340	2.6
II. 재정운영결과	13,462,310	13,826,148	363,838	2.7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3,843,553	14,166,667	323,114	2.3
IV. 조정항목	51,097	4,133	△46,964	△91.9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7,073,386	17,418,038	344,652	2.0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2023년도 기말순자산은 17조 4,180억 3,800만원으로 2022년말 대비 2.0%인 3,44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3조 8,261억 4,8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4조 1,666억 6,700만원, 조정항목은 41억 3,3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Ⅲ.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

1. 세입 예산(과태료·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

- 경찰청 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86.2%)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53.6%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253억 2,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조 6,583억 2,200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22.4%, 징수결정액 대비 51.8%에 해당하는 1조 3,772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조 2,760억 2,600만원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125,327	2,658,322	1,377,276	122.4	51.8	5,019	1,276,026

※ 자료 : 경찰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미 수 납 사 유
합 계	1,125,327	2,658,322	1,377,276	122.4	51.8	1,276,026	
재산수입	3,854	4,554	4,317	112.0	94.8	237	
토지대여료	1,421	1,212	982	69.1	81.0	230	
건물대여료	1,717	2,238	2,233	130.1	99.8	5	
기타관유물대여료	-	1	1	-	100.0	-	
기타재산수입	716	1,103	1,101	153.6	99.7	3	
경상이전수입	1,110,821	2,643,462	1,362,706	122.7	51.5	1,275,737	
벌금및과료	92,312	76,024	76,024	82.4	100.0	-	
과태료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거소불명·사망 법인 폐업 등
징계부가금	23	748	158	687	21.1	589	
변상금	118	2,715	153	130.5	5.7	2,549	
위약금	1,738	590	590	33.9	100.0	-	
가산금	36,110	242,292	32,290	89.4	13.3	209,064	거소불명·사망 법인 폐업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0,966	27,602	25,054	228.5	90.8	2,54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2	6,285	6,233	139.7	99.2	-	
면허료 및 수수료	881	925	925	105.0	100.0	-	
수업료	430	564	532	123.7	94.3	32	
기타잡수입	3,151	4,796	4,775	151.5	99.6	20	
관유물매각대	6,190	4,021	4,020	64.9	99.9	-	
기계기구매각대	5,094	3,633	3,633	71.3	100.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69	373	373	79.5	100.0	-	
토지매각대	627	15	15	2.4	100.0	-	

※ 자료: 경찰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그 밖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과태료 예산액이 9,695억 5,4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 1조 1,253억 2,700만원의 약 86.2%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과태료와 가산금의 수납률이 각각 징수결정액 대비 53.6%, 13.3%로 저조하며 이는 과태료와 가산금 항목을 제외한 세입 과목 평균 수납률이 95.1%를 보이고 있는 것에도 대조적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125,327	2,658,322	1,377,276	122.4	51.8	5,019	1,276,026
A + B	1,005,664	2,535,783	1,260,727	125.4	49.7	5,006	1,270,050
과태료(A)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4,069	1,060,986
가산금(B)	36,110	242,292	32,291	89.4	13.3	937	209,064
:							

※ 자료: 경찰청

□ 과태료(56-563)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경비업법」 제31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 또는 단속법 위반에 대해 질서벌로서 금전적 납부 의무를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9,695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2,934억 9,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2,284억 3,6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액 대비 126.7%, 징수결정액 대비 53.6%임.

가산금(58-581)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된 과태료를 대상으로 가산금(100분의3)과 증가산금(1개월 경과 시 1천분의 12)을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361억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22억 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2억 9,1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액 대비 89.4%, 징수결정액 대비 13.3%임.

<최근 3년간 과태료·가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C/A	C/B		
과 태 료	'21년	699,607	1,759,607	860,688	123.0	48.9	894,690	4,229
	'22년	848,674	2,122,089	1,141,266	134.5	53.8	974,404	6,418
	'23년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4,069
가 산 금	'21년	36,110	181,339	29,999	83.1	16.5	150,492	848
	'22년	27,515	213,166	30,069	109.3	14.1	181,754	1,343
	'23년	36,110	242,292	32,291	89.4	13.3	209,064	937

- ☐ 최근 3년간 과태료·가산금 결산 내역에 따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점차 증가하는 동시에 미수납액 또한 증가하여, 수납률은 저조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징수결정액의 증가는 무인단속장비 및 공익신고의 증가 등의 영향이고 미수납액의 증가는 체납자의 소재불명·사망, 법인 폐업 등으로 인해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나, 과태료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일반적인 세입 예산의 취지 뿐만 아니라, 법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라는 면에서 50%대의 수납률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찰청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³⁾, 예금·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무인사기획관실】

1.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7111-262)

-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중 ‘경찰의 날’ 행사 개최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목별 구체적 예산 확보 없이 먼저 행사를 치르고 관련 경비는 사후에 예산조정을 통해 지출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집행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 경찰청은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동 사업이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은 경찰청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의 날’ 등 행사를 개최하고 청사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용역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현액은 이·전용등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80억 9,7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7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300만원(7.2%)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7,846	7,846	-	250	-	8,097	7,514	-	583	8,365

※ 자료: 경찰청

나. 행사 관련 예산 적정 편성 및 세목조정 최소화 필요

□ 동 사업예산 중 일반용역비(210-14) 세목⁴⁾은 ‘경찰의 날’ 행사 개최, 소규모 청소용역 등을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년 예산액은 3억 3,000만원이고, 이·전용등(세목조정) 2억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 6,600만원이며, 이 중 5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그런데, 해당 일반용역비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경찰의 날’ 행사의 경우 예산에 편성된 2억 5,000만원 보다 2억원을 초과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일반수용비(210-01)로부터 2억 700만원을 조정하였고, 시무식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일반수용비(210-01)로부터 1,400만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4)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 ‘세목조정’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동일 목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 세목조정은 세항(단위사업) 간 목에 편성된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전용’보다는 한 단계 낮은 예산 단위인 세목 간에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국가재정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세목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음. 다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세목조정은 세목 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경찰의 날’ 및 ‘시무식’ 행사 관련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시무식 (‘23.1.2.)	세목조정 (‘23.3.8.)	경무인사 기획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14	경무인사 기획관 기본경비	일반용역비 (210-14)
경찰의 날 (‘23.10.18.)	세목조정 (‘23.12.21.)		일반수용비 (210-01)	207		일반용역비 (210-14)

※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최근 4년간 행사 개최 시 편성된 예산보다 ‘경찰의 날’ 행사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타 세목으로부터 예산 조정을 반복해 왔음.

<최근 5년간 ‘경찰의 날’ 행사 관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세목조정 (조정일자)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9	230	196 (‘19.11.29)	426	396	30
2020	230	134 (‘20.12.08)	364	359	5
2021	250	137 (‘21.12.23)	387	369	18
2022	250	343* (‘22.12.27)	593	587	6
2023	250	207 (‘23.12.21)	457	449	8

※ 자료: 경찰청

□ ‘경찰의 날’ 및 ‘시무식’ 행사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사례를 검토한 결과, 집행방식 및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는 매년 10월에 개최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의 규모 등을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과거 예산집행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을 타 세목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 수년간 반복되었음. 동 사업이 기본경비⁵⁾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 증액이 수월하지 않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행사의 규모나 목적을 반영하기에는 관리용역비(210-16) 예산이 부족하고 타 세목(210-01)에서는 연례적으로 불용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과거 세목별 집행실적 등을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관련 세목에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었어야 함.

둘째, ‘시무식’ 및 ‘경찰의 날’ 행사집행과 관련하여 행사를 종료한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목 간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 시무식행사는 1월 2일에 개최하고 3월 8일에 조정을 하였고, ‘경찰의 날’ 행사는 10월 18일에 개최하고 조정은 2개월이 지난 12월 21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5) 「2023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의하는 기본경비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① 기본행정경비 ②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③ 사회복지무요원 운영비 등임.

일반적으로 행사 계획 시 행사의 목적, 장소, 규모, 내용 등을 반영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세목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수립하여 늦어도 용역입찰 공고 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출 및 계약업무 절차라고 할 때, 동사업과 같이 세목별 구체적 예산 확보 없이 행사를 먼저 개최하고 사후에 세목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식의 행정편의적 집행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무식 행사의 경우 경찰청은 경찰청장 취임 후 첫 시무식으로 과거에 비해 참석범위가 확대('22년 30인→'23년 100인)되고 중계방송을 실시해 용역비 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나, 동영상 촬영 용역비 외에 별도로 계약한 행사 진행 관련 용역비의 상세 내역을 살펴본 결과, 시무식 행사 중 경품 추첨에 필요한 선물 구매 내역 등 관리용역비 세목으로 집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집행이 있음. 이러한 용도의 지출은 업무추진비(240목) 또는 기타운영비(210-14목)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경찰청은 경무인사기획관실이 주최하는 시무식 및 경찰의 날 행사의 경우 회계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목조정을 최소화도록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정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경찰의 날 행사 개최비용은 행사의 의미,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기본경비로 집행하기보다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여 소요 예산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⁶⁾.

6) 참고로, 소방청은 ‘소방의 날’ 행사 개최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음(‘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행사지원’, 1131-300).

다.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 개선 필요

□ 퇴직준비교육(舊 공로연수) 지원 사업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상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교육비·교재비 등의 실지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퇴직예정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오랜 기간 공직에 익숙해진 경찰관이 퇴직 후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경찰청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억 400만원을 불용하고 집행한 금액은 4,600만원에 그쳐 집행율이 13.2%에 불과하였음.

<2023년도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 개요 및 집행 현황>

< '23년도 퇴직준비교육생 및 지원금 지급 현황 >

총 예산 배정	⇒	퇴직준비 교육생	≫	신청자 64명 실 지급액	⇒	잔여액
3억 5천만원		총 404명		5천만원		3억원

< '23년도 개인별 지원금 지급 사례 >

- ① (일자리) △ 요양보호사 △ 시니어 모델 과정 △ 미디어 중독 상담사 △ 미용
- ② (자격증 취득) △ 지게차·굴착기 기능사 △ 대형 운전면허 △ 사회복지사
- ③ (자기계발) △ 탁구 레슨 △ 타악기 지도자 △ 성악 △ 한식조리사
- ④ (재테크·부동산) △ 부동산대학원 수업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정년퇴직 예정자의 수를 404명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64명에 불과하였음.
- 경찰청은 퇴직준비교육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대상자가 적었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신청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임.
- 개인의 퇴직 준비는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2023년에 처음 시행된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적은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404명의 사업 대상자의 수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 신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보임.
- 경찰청은 향후에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자 각자의 종전 직무와 관련성 있거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3년도 지원금 지급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미래치안정책국]

1. 피복관리(4231-313)

- 2023년도 피복관리 예산 중 경찰관 피복류 구매 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범 운영 및 시제품 개선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경찰청은 신형 피복류가 계획대로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경찰관이 안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에는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장비 개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집행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피복관리’ 사업은 경찰 근무에 필수적인 제복 및 장구류를 지원하고, 전시 증원되는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피복을 비축함으로써 현장 경찰관의 직무역량을 향상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679억 2,700만원이며, 이 중 81.2%인 55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7,300만원(18.5%)을 이월하였으며, 2억 2,200만원(0.3%)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피복관리	67,095	67,095	832	-	-	67,927	55,132	12,573	222	60,857

※ 자료: 경찰청

나. 경찰 피복 구매 계약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경찰관 피복비는 경찰 근무에 필수적인 제복 및 장구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 2023년도에 동 사업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25억 7,300만원으로 18.5%에 달하였음.

이월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신형방검복 4종 구매 계약에서 총 124억 1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고정형 외근조끼 구매 계약에서 8,700만원, 하계 칠피단화 2차 구매 계약에서 1,100만원, 경찰관 정모 구매 계약에서 7,4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피복비 구매 계약별 이월액 및 이월 사유>

(단위: 백만원)

연번	계약명		이월액	이월사유
1	고정형 외근조끼		87	제품 하자 발생
2	하계 칠피단화 2차 구매		11	업체 생산 지연
3	경찰관 정모		74	업체 생산 지연
4	신형 방검복 4종	다기능 방검복	2,654	제품 개발에 따른 본구매 절차 착수 지연
5		내피형 방검복	7,846	제품 개발에 따른 본구매 절차 착수 지연
6		찢림방지 목보호대	1,330	제품 개발에 따른 본구매 절차 착수 지연
7		베임방지 재킷	571	제품 개발에 따른 본구매 절차 착수 지연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신형 방검복은 삽입형 방검 패드의 무게로 인한 신속한 착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용도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비로서,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범죄와 같은 흉기를 이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장비임.

<신형 방검복 4종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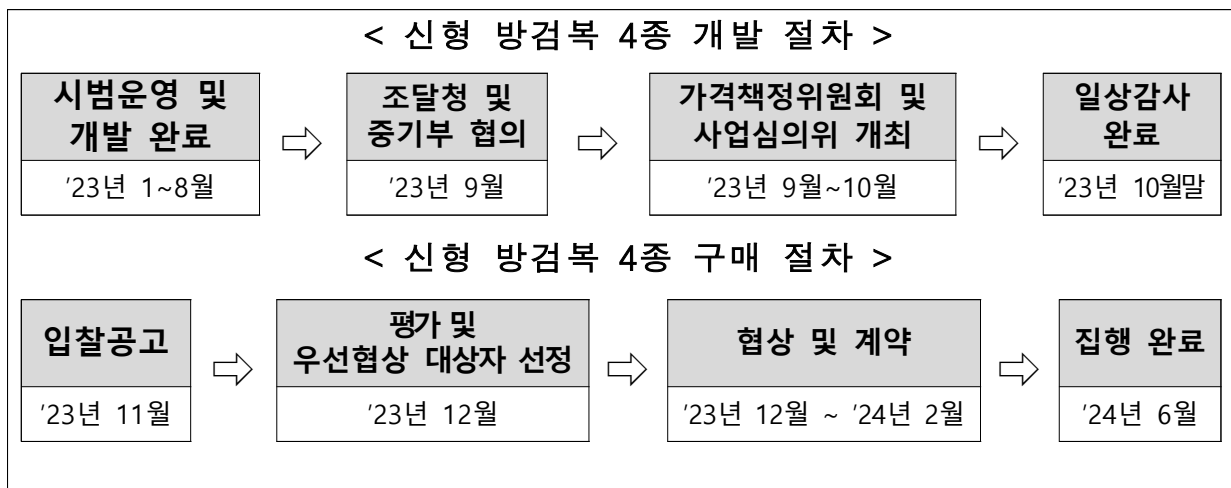
① 다기능 방검복			② 내피형 방검복		
	구매 수량	4,183		구매 수량	17,442
	무게(kg)	전체 2.1 앞옆면 1.1		무게(kg)	전체 1.4 앞면 0.7
	성능	국제규격 NIJ LV.1		성능	국제규격 NIJ LV.1
△ 물리 구조로 장비 수납 △ 외근현대 동시 착용 및 상시착용 가능 △ 무게 분산 기능 △ 공기 통풍 강화			△ 초경량화 △ 한 치수로 착용 범용성 높음(다양한 체형 소화 가능) △ 기동성·활동성 강화		
③ 찢림 방지 목보호대			④ 베임 방지 재킷		
	구매 수량	11,228		구매 수량	6,127
	무게(kg)	300		무게(kg)	전체 1.1
	성능	국제규격 NIJ LV.1		성능	미국표준 Cut A 9
3패널 구조의 인체구조를 고려한 3D 입체패턴을 적용, 착용감 개선, 순찰차 내부 탑재하여 신속한 착용 가능			△ 목팔손등 전체 보호 △ 고활동성편안한 착용감 △ 사복경찰관 위장 착용 가능 △ 내피형 방검복과 착용 시 완벽 보호 가능		

※ 자료: 경찰청

□ 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경찰청은 신형 방검복 4종 도입 사업의 경우 신형 제품에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 시제품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최종 형상이 2023년 10월 초에야 확정되어 구매절차가 11월에야 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신형 방검복 4종 개발 및 구매 절차>



※ 자료: 경찰청

- 고정형 외근조끼의 경우 납품 이후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전량 회수 후 사후 조치를 하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하계 칠피 단화의 경우 업체의 생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경찰관 정모의 경우 승진 인원 증가로 인한 구매 수요의 증가로 생산이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했다는 설명임.
- 입찰 공고·협상·계약과 같은 절차는 시간과 행정적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선행하는 개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면밀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제품상의 하자로 인한 사후처리, 업체의 생산 지연에 따른 계약 지연이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우수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보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일정 점검을 통해 향후에는 이러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장비관리유지(4231-314)

-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외국산 전자충격기를 국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된 R&D 사업의 성과로 우리 나라의 치안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고 현재 사용중인 장비와 대비하여 개선점이 뚜렷한 장비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장비관리유지’ 사업은 현장 경찰관이 사용하는 장비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전시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무기와 장구를 비축하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와 장구를 보급하고, 이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23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 6,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7억 6,300만원 중 84.4%인 24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200만원(4.2%)을 이월하였으며, 32억 5,500만원(11.3%)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비관리유지	28,002	28,002	761	94	-	28,763	24,286	1,222	3,255	38,189

※ 자료: 경찰청

나.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매 계약 해지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 중 전년도 이월액의 대부분은 2022년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입 및 운영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음. 경찰청은 흉기 등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2005년에 미국 Axon社의 테이저건을 도입하여 현재 총 13,796정을 운용하고 있음. 2021년 11월 발생한 이른바 ‘충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청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2022년 상반기에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에 구매를 추진하였음.

<주요 전자충격기 제원 비교>

구 분		테이저 X26E	테이저 X26P	테이저 7
사 진				
무 게		355g	422g	466g
전 장		200mm	220mm	200mm
발사방식		단발(카트리지 동일)		2연발
레이저포인터		1개(상부)		2개(상·하부)
최대 사거리		6.4m		7.6m
가격	본체	-	201만원	216만원
	카트리지	4만원		3.9만원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진행한 후 하반기에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통상적인 장비 구매

시기보다 늦은 2022년 11월에 납품기일을 2023년 2월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계약에 따라 R&D 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안전성 검사를 마친 3연발 한국형 전자총격기 본체 2,755정, 카트리지 83,300발에 대한 총 36억 8,0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29억 4,300만원을 2022년도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7억 3,600만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음.
- 그런데 제품에 대해 2023년 7월에 실시한 1차 납품검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해 10월에 2차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차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됨.

<한국형 전자총격기 도입 추진 경과>

- ▶ (개발 기간) '16. 7. ~ '18. 9.(3년)
- ▶ (총 사업비) 13억 5천만원(정부출연 10억원)
- ▶ (안전성검사) '18. 11. ~ '19. 4. 검사 후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19. 9. 6.)
- ▶ (장비 개선) '19년 말 시제품 100정 구매 후 '21. 11.까지 전수검사 및 개선
- ▶ (시범 운영) '22. 1. ~ 6. 한국형 전자총격기 100정 현장 시범운용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장비에 대한 보완과 납품 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2023년도 연내 납품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계약 해지가 완료되었음.
- 그 결과 2023년도 집행 예정이던 잔금 7억 3,600만원을 불용하고 이미 집행된 29억 4,300만원에 대한 반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설명임.

<전자충격기·카트리지 구입 및 운영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2023년	8,945	736	9,681	8,771	-	736	7.6%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매가 무산됨에 따라 대신 1,220정의 미국산 테이저7 전자충격기를 구매하는 데 26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카트리지 구매를 위해 6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전자충격기는 본품의 구입 뿐 아니라 카트리지를 구입하는 데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한번 구매한 전자충격기에 대해서는 같은 제조사가 인증한 카트리지만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품목임.

<2023년도 전자충격기·카트리지 구매 수량>

	테이저7	테이저X26P
2023년	15,333발	127,572발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관련하여 향후 제조사가 품질을 보완한다면 업체간 경쟁을 통해 다시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발주처가 한정되어 있는 치안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발 업체에 계약상 책임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제품 보완 및 신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외국산 전자충격기를 국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된 R&D 사업의 성과로 우리 나라의 치안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고 현재 사용중인 장비와 대비하여 개선점이 뚜렷한 장비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 경찰청은 예산 편성 시 실구매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단가를 책정하여 노후 차량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은 노후 경찰차량 교체 및 순찰차·업무차량 지원 등을 통하여 현장 경찰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치안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915억 5,900만원 중 97.1%인 888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 7,800만원(2.8%)을 이월하였으며 1억 300만원(0.1%)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기동력강화	88,471	88,471	3,088	-	-	91,559	88,878	2,578	103	91,458

※ 자료: 경찰청

나. 현장 수요에 맞는 차량 구매를 위한 편성단가 조정 필요

□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중 노후차량교체 사업은 노후화된 순찰차 및 기능별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경찰의 기동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은 2023년도 예산을 순찰차량 977대와 기능별 차량 1,034대의 교체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순찰차 903대를 구매하여 계획 대비 74대 부족하였고, 기능별 차량은 882대를 구매하여 계획 대비 152대 부족하였음.

<2023년 경찰 차량 노후차량 교체 편성 및 구매 현황>

구분	차종		차형	2023년		
				계획	실제	비고
노후 교체	순찰차량 (977대)		전기중형	217대	170대	
			수소전기	45대	36대	
			112중형	601대	644대	
			고속	109대	48대	
			암행	5대	5대	
	기능별 차량 (1,034대)	친환경	전기승용	391대	360대	
			수소전기버스	3대	3대	
		일반	일반승용	27대	10대	
			일반승합	480대	413대	
			화물	10대	7대	
			특수	13대	12대	
이륜			110대	77대		
합 계				2011대	1785대	※ 계획대비 226대 부족

※ 자료: 경찰청

- 이처럼 계획 대비 구매 수량이 부족한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예산 편성시 설정된 순찰차량의 단가가 실제 구매 단가의 80%대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차량과 같은 개별 단가가 큰 항목에 대해 예산 단가와 실제 구매가의 차이가 계속될 경우 실제 필요 수량보다 수요를 과장하여 예산을 요구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실제 필요한 차량 교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구매가의 95% 수준까지 편성단가를 올리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청이 구매를 계획하는 차종 중 전기중형순찰차와 수소전기순찰차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한 편성 단가가 구매단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중 하나로 수송 분야를 선정하여 무공해차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공해 차량의 편성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3년 순찰차량 요구·편성단가 및 실제 구매단가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 단가 (A)	편성 단가 (B)	구매 단가 (C)	단가 차이 (C-B)
순찰차	전기중형순찰차	6,800 (94.5%)	5,930 (82.5%)	7,190	1,260
	수소전기순찰차	7,900 (95.1%)	7,000 (84.3%)	8,300	1,300
	중형112순찰차	4,600 (109.5%)	3,699 (88.0%)	4,200	501
	고속순찰차	5,900 (104.7%)	5,000 (88.8%)	5,630	630
	암행순찰차	5,500 (96.5%)	5,500 (96.5%)	5,700	200

※요구단가(A), 편성단가(B) 아래 괄호는 실제 구매 단가 대비 요구·편성단가 비율임
 ※자료:경찰청

□ 또한, 경찰청이 노후 차량 교체 사업을 통해 구매하려는 차량의 대부분은 내용 연수 경과로 인한 필수 교체 수요에 해당하고, 구매 차량은 시판 중인 차량에 경찰 업무에 맞게 특수 장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비교적 시세가 명확히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예산 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경찰청은 예산 편성 시 실구매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단가가 책정되어 노후차량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찰인재개발원]

1. 경찰인재개발(4132-311)

- 상시학습현장 교육 프로그램 중 경찰교양아카데미,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현장대응력 강화 교육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전문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인재개발’ 사업은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63억 1,100만원이며, 이 중 90.8%인 57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8,200만원(9.2%)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인재개발	6,555	6,555	-	△244	-	6,311	5,729	-	582	7,421

※ 자료: 경찰청

나. 상시학습현장 교육 세부 프로그램의 임의적 조정 지양

- 경찰인재개발 사업 중 상시학습 현장교육 내역사업은 현장경찰관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경찰서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소양·리더쉽 교육으로 ① 경찰서·지역경찰 현장교육, ② 경찰교양아카데미, ③ 중간관리자 리더쉽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경찰청은 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0.5%인 11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상시학습 현장교육 결산 내역에 따르면,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경찰교양아카데미, 1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중간관리자 리더쉽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경찰서·지역경찰 현장교육 프로그램에 편성한 예산 9억 7,500만원보다 많은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경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중간관리자 리더쉽 교육과정은 희망자에 한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지휘부와 현장 소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든 경정·경감을 교육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기본교육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2024년에는 근속승진의 확대 등으로 중간관리자 리더쉽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찰교양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을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면 개편하라는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2024년에 관련 예산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 상시학습 현장교육 사업은 약 14만명의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무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일시적 수요 변동 보다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3년도 상시학습 현장교육 사업 구성 및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경찰서·지역경찰 현장교육	경찰교양아카데미	중간관리자 리더십교육
내 용	현장경찰관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기능별 직무교육	인권, 사법개혁, 경찰정신, 역사, 철학,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교양 습득	중간관리자 핵심역량 강화 교육 ※위기상황 해결, 갈등 조정, 조직 문화 형성 등
대 상	경찰서 소속 전 직원 (경정이하 경찰관·일반직·주무관)	경찰서 소속 전 직원	경찰서 소속 경정·경감
운영 방법	14개 기능별 직장교육, 전문교육 연중 실시	해당 분야 권위자 또는 연구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강사로 위촉, 격월 2시간 실시	시·도청별 연 1회 이상 소집교육 실시
'23년 예산	975	335	161
'23년 집행	1,190	-	-

※ 자료: 경찰청

- 현장대응력 강화에 대한 일시적 교육 수요가 증가하였다면 경찰서·지역경찰 현장교육 프로그램 내의 조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고, 중·장기적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향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는 등 예산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해외 경찰주재관 대상 의료비·실의료비를 편성함에 있어 주재관의 동반가족 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이고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은 해외경찰 주재관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활동을 강화하여 외국인 범죄를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며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66억 4,900만원이며, 이 중 93%인 6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700만원(7.0%)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외치안협력강화	6,785	6,785	-	△136	-	6,649	6,182	-	467	5,794

※ 자료: 경찰청

나.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 운영비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운영비 사업은 해외 경찰주재관과 동반가족의 신변안전 보험료와 의료보험·실의료비, 전지의료검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는 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9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의 같은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신변안전보험의 경우 집행률이 85%를 상회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실의료비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는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3년에는 20%에 그쳤으며, 전지의료검진비는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이 없었음.

<2023년도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 운영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항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년	신변안전보험	21	20	95.2%
	의료보험·실의료비	55	26	47.3%
	전지의료검진비	2	0	0
2022년	신변안전보험	21	18	85.7%
	의료보험·실의료비	55	23	41.8%
	전지의료검진비	2	0	0
2023년	신변안전보험	21	18	85.7%
	의료보험·실의료비	55	11	20%
	전지의료검진비	2	0	0

※자료: 경찰청

□ 전지의료검진비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제2항, 제31조와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하거나 건강검진제도가 미비한 국가에 대한 파견자와 동반가족에 대해 의료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3개국에 파견되는 주재관이 그 대상이 되고 있음.

<전지의료검진비 근거 규정>

「외무공무원법」 제21조(실비 변상 등) ① 외무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② 재외근무를 하는 외무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6조·제9조·제18조·제19조·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전지의료검진) ① 장관은 국제기구 등의 비교 자료를 근거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전지의료검진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에는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일정액, 그리고 국내 근무자에 준하는 건강검진료 등을 포함한다.

□ 경찰청은 의료보험·실의료비 항목의 낮은 집행률은 동 항목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불측의 사고에 대비한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부 집행할 수는 없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설명이고, 전지의료검진비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예산에 건강검진비만 편성되어 있을 뿐 항공료 등 여비가 미편성되어 실제 검진이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파견 경찰관 1인당 평균동반가족 수>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해외 파견 경찰관 동반가족 수	1.95	2.06	1.68	1.9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경찰청의 의료보험·실의료비 항목의 예산 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파견자 1인당 동반가족 포함 4인을 기준으로 보험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3년간 해외 파견 경찰관의 평균 동반 가족 수는 1.9명으로 해외파견 경찰관 본인을 포함하여 평균 2.9명이 의료보험·실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어 예산 편성 기준의 72.5% 수준에 불과하였음.
- 경찰청은 향후 관련 예산 편성 시에는 해외파견 경찰관의 평균 동반 가족 수를 반영하여 계상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지의료검진비와 관련하여 연례적인 예산 미집행은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개선이 필요함. 예산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실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집행 단계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 대응 및 재난 안전 관리(1431-311)

- 경찰청은 노후화된 순찰용 일반자전거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제도를 통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순찰용 일반자전거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운영방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범죄대응및재난안전관리’ 사업은 112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민안전의 비상벨인 112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지역경찰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239억 1,100만원이며, 이 중 93.7%인 224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200만원(4.8%)을 이월하고 3억 3,000만원(1.4%)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죄대응 및 재난안전관리	23,817	23,817	95	-	-	23,911	22,411	1,142	330	29,880

※ 자료: 경찰청

나. 운영 실적이 부족한 순찰용 일반자전거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이상동기범죄의 급증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 치안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각 시·도청에 기동순찰대를 설치·운영하여 다중밀집장소나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대한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순찰용 일반자전거는 기동력을 이용하여 순찰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친화적 순찰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순찰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청은 매년 1,700만원의 보험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200만원의 보험료를 집행하였음.
- 경찰청에 따르면 순찰용 일반자전거는 2010년 3,500대, 2011년 1,111대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추가 도입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646대가 운영되었고 2023년에는 그 수가 418대로 감소하여 도입 당시 수량의 9.1%에 불과함.
-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의 경우 순찰용 일반자전거를 활용하거나, 경찰관이 관서장에게 신고한 후 개인용 자전거를 이용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청이 순찰용 일반자전거의 활용 현황이나 개인용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개인의 체력과 기상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전거 순찰의 특성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임.

<최근 3년간 시·도청별 순찰용 일반자전거 보유 현황>

연 도	지역별 순찰용 일반자전거 보유 현황								
2021년 (64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88	20	19	34	0	13	8	0	111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6	0	0	43	2	5	102	125	0
2022년 (64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88	20	19	34	0	13	8	0	111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6	0	0	43	2	5	102	125	0
2023년 (4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85	13	14	33	0	7	4	0	46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	0	0	20	1	5	67	81	0

※ 자료: 경찰청

□ 순찰용 자전거 보험료는 경찰의 순찰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자전거에 대해 순찰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찰용 일반자전거를 포함한 경찰용 자전거에 대한 보험금이 청구된 사례는 없었고, 전기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PM)을 이용한 순찰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설명임.

<2023년 경찰용 자전거에 대한 보험 내용 및 산정 근거>

항목	보험 내용	비고
담보위험	▶ 자전거 순찰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본인상해 불포함
보상한도	▶ 연간 총사고 : 10억 원 / 개별사고 : 1억 원	
보험조건	▶ 적용 대상 인원 - 지역경찰 50,624명 ('22년 12월말 기준 정원) - 그 외 자전거 순찰에 동원된 근무자 포함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 사전 승인 이후, 동원되어 자전거 순찰근무를 하는 경찰관 ※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또는 방범활동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비부대 소속 경찰관 및 의경 ▶ 경찰 순찰용 자전거 418대 - 그 외 자전거 순찰근무에 동원되는 개인용 자전거 등 포함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업무에 동원된 자전거임을 확인한 것에 한함.	

※ 자료: 경찰청

□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은 소형 근린공원이나 골목길 등에서 효과적인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자전거 순찰 활동은 노후화 및 효율성 저하로 인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경찰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의 경우 손실보상 제도⁷⁾를 통해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경찰청은 순찰용 일반자전거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운영 방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자전거 순찰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면 노후화된 자전거의 단계적 교체,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이동수단의 활용 등 순찰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2.>
- 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2.>
-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생활안전교통국]

1. 교통과학장비관리(1331-313)

-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가 대비 낮은 입찰단가 차이로 인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해 계획수립시 반영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있는데, 과거 동일한 종류의 장비 입찰단가 추이를 반영해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수요조사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장비를 임의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은 무인단속장비 및 음주단속장비를 구매·교체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위법행위 단속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은 1,164억 7,100만원이고, 이·전용된 38억 6,7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126억 400만원이며, 이 중 1,016억 2,800만원을 집행(90.3%)하고 2억 8,100만원을 이월, 106억 9,500만원(9.5%)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통과학장비관리	116,471			△3,867		112,604	101,628	281	10,695	122,277

※ 자료: 경찰청

나. 무인단속장비 구매 수량 및 단가의 추계정확성 제고를 통해 연례적인 불용 지양

□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은 노후·고장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고위험지역에 해당 장비를 신규 설치하며, 무인단속장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회선사용료, 과태료 등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역사업은 과속·이동식·이륜차 무인단속장비 구매(29억 8,700만원)와 무인교통단속장비 회선사용료·보험료·우편료(573억 400만원), 위탁관리비(526억 7,700만원) 및 음주단속장비 구매·운영비(25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무인단속장비 집행현황을 보면, 장비구매예산액 29억 8,700만 중 21억 6,000만원을 집행(집행률 72.3%)하고, 2억 8,100만원(차량탑재형 이동식장비)을 이월하였으며, 5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경찰청은 불용액이 주로 낙찰차액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4년간 유형별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 상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편성 당시 구매단가 대비 집행단가 차이로 인해 2020년 28억 5,600만원, 2021년 6억 8,700만원에 이어 2023년 다시 5억 3,700만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한 구매 수량보다 많이 구매하거나 구매계획에 없었던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⁸⁾

<최근 4년간 무인단속장비 구매사업 편성예산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이월	불용
'20년	계	9,900	1,926	5,118	2,856
	과속	3,240 (108대×30백만원)	427 (90대×19.858백만원×23.874%)	5,118	2,856 (낙찰차액)
	구간	240 (8대×32백만원)	285 (59대×20.211백만원×23.874%)		
	다기능	6,080 (190대×32백만원)	393 (175대×21.379백만원×23.874%)		
	이동식	340 (20대×17백만원)	321 (20대×16.056백만원)	-	
'21년	계	11,205	8,920	1,598	687
	과속	3,660 (122대×30백만원)	1,159 (55대×21.08백만원)	-	687 (낙찰차액)
	구간	240 (8대×30백만원)	2,144 (100대×21.44백만원)		
	다기능	6,880 (215대×32백만원)	4,810 (214대×22.475백만원)		
	이동식	425 (25대×17백만원)	411 (111대×16.025백만원×23.103%)	1,368	
	탐재형	-	396 (27대×23.207백만원×63.158%)	230	
'22년	계	2,030	2,009	-	21
	과속	840 (28대×30백만원)	-	-	21 (낙찰차액)
	구간	-	720 (32대×22.498백만원)	-	
	다기능 (후면)	-	106 (3대×35.369백만원)	-	
	이동식	102 (6대×17백만원)	98 (6대×16.297백만원)	-	
	탐재형	1,088 (68대×16백만원)	1,085 (43대×25.224백만원)	-	
'23년	계	2,987	2,169	281	537
	과속	570 (19대×30백만원)	70 (3대×23.2백만원)	-	
	구간	210 (7대×30백만원)	463 (20대×23.2백만원)		
	후면단속	1,000 (25대×40백만원)	622 (25대×24.9백만원)		
	이동식	119 (7대×17백만원)	116 (7대×16.6백만원)	1,368	
	탐재형	1,088(47대×23백만원)	799 (47대×17백만원)	230	
	회전식	-	99 (3대×33.1백만원)		

8) 구매계획 시 반영하지 않았던 장비로 2021년 차량탐재형 단속장비 27대, 2023년 전차로 회전식 단속장비 3대를 추가 구매하였음.

- 2023년 구매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수립 시 과속·구간 단속 장비로 각각 19대, 7대로 총 26대를 3,000만원 단가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시에는 23대를 구매하였으며, 단가는 대당 약 2,320만원으로 약 700만원 차이가 발생하였음.

경쟁입찰로 인한 단가하락을 예산편성 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동 장비의 구매단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00만원에서 2,200만여 정도로 형성되었던 과거 입찰사례를 고려할 때 매년 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낙찰차액으로 당초 계상되지 않은 ‘전차로 회전식’ 단속 장비를 구매하는 식의 편의적 집행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예산 편성·집행지침은 모든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구매에서 최근 낙찰가액 평균단가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이용·불용을 최소화하고, 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않았던 장비구매는 지양하는 등의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다. 무인단속장비 운영관련 우편요금 연례적 불용과다

□ ‘우편요금’은 교통 관련 무인단속장비의 운영에 따른 과태료 등 고지서를 발급·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573억 400만원이고 이·전용된 40억 4,0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532억 6,400만원이며, 이 중 432억 8,900만원(82.6%)을 집행하고 99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우편요금 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우편요금 등	57,304	-	-	△4,040	-	53,264	43,289	-	9,975	55,066

주1: 우편요금 등에는 회선사용료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1% 미만임.

※ 자료: 경찰청

이·전용된 예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최근 3년간 우편요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 대비 77.1%, 2022년 75.5%, 2023년 75.5%로 불용률이 매년 약 23~25% 정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우편요금 등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1	43,795	△2,328	41,467	33,781	7,685	77.1
2022	52,745		52,750	41,703	11,047	75.5
2023	57,304	△4,040	53,264	43,289	9,975	75.5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무인단속장비 설치증가에 따라 단속 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편료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2022년 예산대비 45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⁹⁾,

최근 3년간 무인장비 운영현황, 단속건수, 발송건수 등을 살펴보면, 2021년 14,315대였던 무인장비는 2022년 20,262대, 2023년 24,407대로 전년대비 20.5% 증가함에 따라 단속건수는 2022년 20,427천건에서 2023년 21,295천건으로 868천건(4.2% 증가)했지만, 과태료 등 고지서 발송 건수는 2022년 44,738천건에서 2023년 43,986천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752천건이 감소(△1.7%)하였음.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단속건수>

(단위: 대, 천건, %)

구 분	2021	2022	2023	'22년 대비 증가율
운영대수	14,315	20,262	24,407	17
단속건수	16,010	20,427	21,295	4.2
발송건수 ¹	37,152	44,738	43,986	△1.7

주1: 발송건수(일반우편, 등기우편, 전자메일)는 모바일 고지 발송건수를 제외한 수치임.

※ 자료: 경찰청

9) 우편료 산정방식: 무인단속당비대수×1대당 평균 단속건수×우편료단가

□ 2022년과 2023년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단속건수 현황을 비교하면, 설치대수 증가에 비례하여 단속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고, 단속건수가 일정 부분 증가하였음에도 고지서 발송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음. 발송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22년 6월 도입된 경찰우편의 모바일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모바일 발송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전체 경찰우편물 중에서 모바일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6월에 0.8%에서 동년 12월에 3.4%, 2023년 12월에는 7.7%로 증가하였음. 발송유형별 건당 발송비는 등기우편은 2,520원인데 비해 모바일고지는 5.5원이며, 그 비용은 행안부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모바일고지가 일반우편을 대체할수록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모바일 전자고지 추이 등>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2022년 6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발송건수	29,076	113,151	273,140
모바일 고지 비중	0.8	3.4	7.7
절감액	68	102	236

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건수는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539,445건, 23년 발송건수는 3,128,255건임.

주: 모바일 전자고지는 22년 6월 처음으로 시행되었음.

※ 자료: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발송유형별 건당 발송비 >

(단위: 원)

구분	등기우편	일반우편	공인전자주소(메일)	모바일고지
종류	2,520	500	98	5.5

주: 발송유형별 건당 발송비는 제작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며, 모바일고지 금액은 행안부에서 지출함.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의 집행 부진은 장비대수 증가에 비례해서 단속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고, 모바일고지 선호에 따라 과태료 등 고지서 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 참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①무인단속장비의 설치공사 및 장비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단속 장비가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②경찰청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우편물을 통해 발송되는 고지서의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지적한 바 있음.¹⁰⁾
- 따라서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설치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대수, 단속건수, 발송건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가입자 수, 전자고지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정 우편요금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불용을 최소화하고, 모바일고지가 발송비 절감 및 수납의 편의성,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22년 11월 9일자)

2.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 공단은 사용자가 퇴직금 운용의 주체가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법령에 부족시 해소 의무 및 구체적 조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퇴직연금 지급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퇴직금 적립비율을 현재보다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수요를 적절히 예측하고 사업실적을 제고하여 수입예산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49억 3,400만원이 전액 출연(집행률 100.0%)되었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134,934	134,934	-	-	134,934	134,934	-	-	145,005

※ 자료: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액은 3,988억 5,600만원이었으나, 수입결산액은 3,722억 4,800만원으로 266억 8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고, 지출결산액은 3,697억 4,700만원으로 291억 9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총 25억 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도로교통공단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예·결산				2024년 예산
			예산현액	실 적	증감	결산 잉여금	
수 입	315,310	352,756	398,856	372,248	△26,608	2,501	411,200
지 출	311,198	350,493		369,747	29,109		

※ 전년도 수입대비 19,492백만원(5.53%), 지출대비 19,254백만원(5.49%) 증가

<2023년도 사업별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비고
[수 입]	398,856	372,248	
① 사업수입	240,462	215,474	
▪ 안전사업	106,349 (14본·지부×7,596.3백만원)	103,489 (14본·지부×7,392.1백만원)	
▪ 교육사업	14,366 (14본·지부×1,026.1백만원)	10,965 (14본·지부×783.2백만원)	
▪ 방송사업	5,200 (13본·지방방송국×400.0백만원)	4,957 (13본·지방방송국×381.3백만원)	
▪ 면허사업	107,522 (27시험장×3,982.3백만원)	90,715 (27시험장×3,359.8백만원)	
▪ 연구사업	6,754 (5부서×1,350.8백만원)	5,150 (5부서×1,030백만원)	
▪ 임대사업	271 (3조직×90.3백만원)	198 (3조직×66.0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비고
② 사업외수입	774	1,201	
▪ 이자수입	188 (1식×188.0백만원)	675 (1식×675.0백만원)	
▪ 잡수입 등	586 (2식×428.0백만원)	526 (2식×263.0백만원)	
③ 기타수입	22,686	20,639	
▪ 전년도이월금 등	22,686 (3식×7,562.0백만원)	20,639 (3식×6,879.70백만원)	
④ 도로교통공단출연금	134,934	134,934	
[지 출]	398,856	369,747	
① 도로교통사업	193,852	173,340	
▪ 안전사업	43,737 (14본·지부×3,124.1백만원)	40,878 (14본·지부×2,919.9백만원)	
▪ 교육사업	9,704 (14본·지부×693.1백만원)	8,095 (14본·지부×578.2백만원)	
▪ 방송사업	23,330 (13본·지방방송국×1,794.6백만원)	22,118 (13본·지방방송국×1,701.4백만원)	
▪ 면허사업	78,138 (28본·시험장×2,790.6백만원)	67,413 (28본·시험장×2,407.6백만원)	
▪ 연구사업	8,008 (5부서×1,601.6백만원)	6,470 (5부서×1,294백만원)	
▪ 경영관리	30,935 (52조직×594.9백만원)	28,366 (52조직×545.50백만원)	
② 기본사업경비	200,321	192,820	
▪ 인건비	196,113 (3,057명×64.2백만원)	189,170 (2,973명×63.6백만원)	
▪ 경상경비	4,208 (52조직×81.8백만원)	3,650 (52조직×70.2백만원)	
③ 예비비	4,683 (3,051명×1.5백만원)	3,587 (3,373명×1.1백만원)	

※ 자료: 도로교통공단

나. 퇴직적립금 적립비율 제고 필요

-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재직 직원 총 3,046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퇴직연금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가입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 직원
- 도입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¹¹⁾
- 제도설정 : 2011년 6월
- 가입인원 : 3,046명(DB 2,813명, DC 233명)
- 적립금액 : 약 711억원(DB, '23.12.31기준)

- 공단의 연도별 퇴직자 및 퇴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퇴직자는 '19년, '20년 각각 116명, 133명 수준에서 '21년 231명, '22년 218명, '23년 19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도 '19년 약 35억 수준에서 '23년 89억 정도로 크게 증가(154%)하고 있음.

- 1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급여수준으로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운용에 따른 수익·손해는 기관의 수익·손해이며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와 비교하여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급여계좌에 납입하며, 운용에 따른 수익·손해는 근로자의 수익·손해로 귀속됨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납부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적립금 운용책임	사용자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매년 연간임금총액×1/12±운용손익
중도인출	불가(담보대출 가능)	사유 충족시 가능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1항 등

<연도별 퇴직자 현황>

(단위:천원)

회계년도	퇴직자	DB퇴직급여 지급(A)	DC제도전환 금액(B)	계(A+B)
2019년도	116명	1,321,751	2,242,452	3,564,203
2020년도	133명	1,958,412	2,635,256	4,593,668
2021년도	231명	2,354,540	6,816,051	9,170,591
2022년도	218명	2,561,895	7,805,602	10,367,497
2023년도	196명	2,187,932	6,732,983	8,920,915

※ 자료: 도로교통공단

□ 공단의 회계연도별 퇴직적립금 및 적립금 비율을 살펴보면, 공단이 장래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확정급여채무는 2019년 기준 약 1,039억 원에서 2023년도에는 약 1,358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퇴직적립금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지 않아 적립비율이 2019년 67.3%에서 2023년 52.3%로 낮아졌음.

<퇴직적립금 적립비율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년도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부채)	사외적립금 (퇴직적립금)	적립비율(%)	법정비율(%)	검증결과
2019년도	103,951	70,003	67.3	90.0	부족
2020년도	115,462	67,092	58.1	90.0	부족
2021년도	121,999	68,508	56.2	90.0	부족
2022년도	130,381	67,100	51.4	100	부족
2023년도	135,810	71,113	52.3	100	부족

※ 자료: 도로교통공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퇴직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및 부족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2021.4.13.)되기 전에는 최소적립금 미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별다른 제재 없이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의무만을 부과하였으나,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의무 위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임.

<법령상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및 위반 시 벌칙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¹²⁾

☐ 공단 직원들이 대부분(92%) 가입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 (사용자) 적립금 부족 해소 위한 조치 미 실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사용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2호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미이행: 200만원, 2차 미이행: 500만원, 3차 미이행: 1,000만원)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 급여 수준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른 부담을 기업이 지는 구조임.

공단의 적립금이 현재와 같이 법정 비율에 크게 부족하게 되면 공단 직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충당금 적립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참고로,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은 정부출연기관이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 사용하도록 구체적 사용순위를 정하고 있음¹³⁾.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계획(A)	292,697	310,395	332,613	372,066	398,856
수입실적(B)	264,428	284,950	315,310	352,756	372,248
증감(B-A)	△28,269	△25,445	△17,303	△19,310	△26,608
지출계획(D)	292,697	310,395	332,613	372,066	398,856
지출실적(E)	261,895	282,109	311,198	350,493	369,747
증감(D-E)	30,802	28,286	21,415	21,573	29,109
결산잉여금	2,533	2,841	4,112	2,263	2,501

※ 자료: 도로교통공단

13)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210P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은 퇴직급여충당금액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

□ 이에 대해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 130조(운영자금 등) 제5항 제3호¹⁴⁾ 근거하여 당해연도 결산잉여금은 차년도 전기이월금 수입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충당금에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며향후 수입 증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 설명함.

14) 도로교통법 제 130조(운영자금 등) 제5항 ③ :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 보전(補填)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실적 개선 필요

- 공단 사업 중 ‘면허발급’ 사업은 일반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등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43억 1,100만원 중 535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2023년도 면허발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추경(A)							
면허발급	64,311	-	-	64,311	53,535	53,535	-	-	66,345
모바일 운전면허증	40,691	-	-	40,691	18,495	18,495	-	-	23,905

※자료: 도로교통공단

- 동 사업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하여 약 287만장(국문 IC면허증 약 115만장, 영문 IC면허증 약 172만장) 발급을 근거로 세입예산액 약 40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023년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실적은 125만 8,389장(43.9%) 발급에 그쳤으며 수납액도 약 184억 9,500만원(45.5%)으로 계획 대비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였음.

<2023년 모바일운전면허증예산 계획 및 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3년						
	계 획			실 적			
	건수	수수료	계	건수	수수료	계	비고
국문IC	1,150,653	13,000원	14,958,489	190,589	13,000원	2,477,657	-
				157,389	15,000원	2,360,835	수수료 인상(23.08.)
영문IC	1,715,526	15,000원	25,732,890	910,411	15,000원	13,656,165	-
합계	2,866,179	-	40,691,379	1,258,389	-	18,494,657	-

※ 자료: 도로교통공단

□ 이와 같은 저조한 사업실적은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기된 사항으로 도로교통 공단은 약 135만장(IC면허증 130만장, QR코드발급 5만장) 발급을 근거로 2022년도에 세입예산액 6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실제 2022년 중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실적은 87만 7,521장 (65.0%)에 그쳤음.

□ 모바일운전면허 발급 사업 초기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적인 실적 부진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은 ①사업초기 불안정한 시스템, ②전문학원을 통한 신규 취득 운전자의 모바일운전면허증 신청 부진, ③홍보 부족, ④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수요 과다계상¹⁵⁾ 등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15) 전체 면허발급 건수의 60%를 적용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 '23년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3년 발급건수(1,258,389건)는 28%의 발급률을 보임

- 2022년 저조한 사업실적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발급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수입 결손을 초래한 것은 모바일운전면허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교통안전활동(1331-312)

-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 조기 안착과 사고율 경감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제 교통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현황 및 법규위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변경된 제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제도 시행 취지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

가. 개 요

- ‘교통안전활동’ 사업은 운전면허 행정처분·범칙금 통지 등을 위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현장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며, 음주 운전 단속 관련 용품 지원 등 교통경찰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420억 4,200만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900만원을 포함한 421억 9,100만원, 집행액은 407억 7,700만원(현액대비 집행률: 96.6%),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0만원, 불용액은 13억 7,000만원임.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인건비성 운영비	27,001	27,001		△ 112		26,875	26,337		538	27,001
· 공공요금	6,660	6,660				6,653	5,923		730	7,263
· 출장여비	634	634		112		745	731		14	634
· 교통장비· 운영비	2,788	2,788	149			2,956	2,853	45	58	2,388
· 기타 교통활동 지원	4,461	4,461				4,464	4,436		28	5,110
· 교통안전교육홍보	498	498				498	497		1	498
합 계	42,042	42,042	149			42,191	40,777	45	1,370	42,894

※ 자료: 경찰청

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그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22. 7. 12.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23. 1. 22. 시행)을 통해, 차량신호 적색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통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임.¹⁶⁾

1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차량신호의 의미)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u>신호에 따라</u>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	--

□ 경찰청은 제도 도입 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 및 1개월의 현장활동 기간 동안 동 제도의 안착을 위해 우회전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시·도청별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법규위반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추진했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 홍보·계도 활동>

구분	활동 내역
계도기간 운영 (3개월)	· 우회전 방법 홍보물 제작·배포 및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23.1.18.), 언론사 인터뷰('23.2.6.) 등 언론홍보 실시 · 유튜브 숏츠 영상 및 Q&A 형식의 카드뉴스 제작 기자단 배포 및 대국민 홍보
안전활동 강화 ('23.4.22.~5.21, 1개월)	· 경찰청장 기자간담회('23.5.1.), 보도자료 배포 및 연합뉴스TV·JTBC 등 인터뷰 · 시·도청별 통일성 있는 계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23.4.26.) · 주요 교차로 진출 현장 계도활동 및 교육·홍보 강화 등 집중 홍보 실시
기타 집중단속 등	· 경찰청장 기자간담회('23.5.1.), 보도자료 배포 및 연합뉴스TV·JTBC 등 인터뷰 · 시·도청별 통일성 있는 계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23.4.26.) · 주요 교차로 진출 현장 계도활동 및 교육·홍보 강화 등 집중 홍보 실시

※ 자료: 경찰청

□ 하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경찰청이 제출한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시행 전후 사고·사망 건수 경감률 등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개선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

사고 건수는 2021년 17,957건, 2022년 18,018건, 2023년 18,198건으로 제도 시행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2021년 136명에서 2022년 104명으로 줄었다가 제도 시행연도인 2023년 12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기간(1.22~12.31)만으로 한정해 보아도 사망자는 108명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2년 104명보다 많음.

<제도 시행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사고 (건)	계 사망 (명)
전체	17,957 (100.0%)	136 (100.0%)	18,018 (100.0%)	104 (100.0%)	18,198 (100.0%)	120 (100.0%)
승용	13,169 (73.3%)	41 (30.1%)	13,337 (74.0%)	29 (27.9%)	13,629 (74.9%)	49 (40.8%)
승합	859 (4.8%)	18 (13.2%)	946 (5.3%)	23 (22.1%)	1,033 (5.7%)	20 (16.7%)
화물	2,216 (12.3%)	32 (23.5%)	2,136 (11.9%)	24 (23.1%)	2,067 (11.4%)	24 (20.0%)
특수	105 (0.6%)	3 (2.2%)	93 (0.5%)	2 (1.9%)	92 (0.5%)	2 (1.7%)
이륜	1,070 (6.0%)	13 (9.6%)	953 (5.3%)	8 (7.7%)	870 (4.8%)	5 (4.2%)

※ 자료: 경찰청

- ☐ 제도 시행 이후에도 사고, 사망 건수에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 점은 오랫동안 형성된 운전 습관을 쉽게 바꾸기 어렵고 제도 시행 초기 홍보 부족 등 제도 안착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홍보 및 단속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경기연구원이 2023년 12월 수도권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 차량으로부터 경적이나 헤드라이트 위협 등 보복성 행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란 응답 비중(30.6%)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란 응답 비중이 32.4%로 1.8%p 더 높게 나타났음¹⁷⁾¹⁸⁾.

□ 2024년 4월 현재까지 우회전 사고·사망 사례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실제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¹⁹⁾,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의 조기안착과 사고율 경감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 후 실제 교통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현황 및 법규위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 홍보 자료에 나오는 사거리에서의 총 6가지 상황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을 아는 운전자는 전체 조사 대상 400명 중 단 1명이었음. 그러나 운전자 스스로는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6.8% 보다 높게 나타나 운전자 간 다툼과 혼란 발생을 근거로 제도개선 효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적시함.

18) 또한, 개선방안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0%), 홍보 및 교육 강화(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15.8%) 순으로 응답하였음.

19) YTN,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1년, 현장 가보니...> 열에 아홉은 위반"> (2024.4.22.)
KBS, <‘우회전 일시정지’ 왜 정착 안 되나?> (2024.3.28.)

- 참고로 경찰청은 직전 연도 대비하여 2023년 하반기 사망자수가 감소하였고(33명→27명),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에 대한 인식률이 높게(93.1%)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임.

[경찰행정지원]

1. 경찰복지증진(7135-311), 기타잡수입(69-691)

○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타 공공부문 골프장과 경찰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과의 차이, 수입을 상회하는 운영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 요금 책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골프를 취미로 하는 경찰공무원과 타 취미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적정 요금 인상 및 타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필요함

가. 개 요

□ ‘경찰복지증진’ 사업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찰수련원 등의 교육·연수시설을 운영하고,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의 체력 유지·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682억 700만원이고 이월액 2,600만원과 이·전용 1억 2,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82억 6,300만원 중 67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집행률 99.0%) 6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0.9%).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 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경찰복지증진	68,207	68,207	26	127		68,263	67,577		656	74,671

※ 자료: 경찰청

나. 경찰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 적정성 검토 필요

-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사업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두 곳에 설치된 골프장을 운영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9억 4,600만원이고 이 중 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경찰 체력단련장은 현직·퇴직 경찰 및 배우자, 순직유가족,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음.

<2023년도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차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946	946				946	927		19	946

※ 자료: 경찰청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개요>

구 분		용 인	아 산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운영기간		1987.10.24.~	2015.4.1.~
시설 현황	면적	286,214m ²	399,405m ²
	홀수	9홀	9홀
	건물	클럽하우스, 간이휴게실, 연습장 등	

- 최근 3년간 체력단련장 이용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후 연간 7만 명 내외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현직 경찰관(배우자 포함)과 퇴직 경찰관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찰 체력단련장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계	현직 (배우자 포함)	퇴직 (배우자 포함)	지역회원	기타*
2021	67,736	29,850	19,622	6,581	11,683
2022	71,154	34,991	18,501	6,914	10,748
2023	70,535	37,994	17,605	6,956	7,980

* 기타: 순직가족, 비회원, 교육생 등

- 체력단련장 이용요금(18홀 기준, 그린피)은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책정되어 있고, 현직 경찰공무원 및 그 배우자, 순직유가족은 2만원, 퇴직 경찰공무원 및 그 배우자는 3만원, 지역주민 6만원(주말·공휴일 9만원), 비회원 8만원(주말·공휴일 12만원)으로, 경찰청은 체력단련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2014년 1월 퇴직 경찰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요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016년 4월 현직 경찰공무원 및 그 배우자, 순직유가족의 요금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2020년 12월 주민과 비회원의 주말·공휴일 이용요금을 각각 9만원(3만원 인상), 12만원(4만원 인상)으로 인상한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경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현직, 현직 배우자 등	2만원	(‘16.4.) 1만 5천원 → 2만원
퇴직자, 퇴직 배우자	3만원	(‘14.1.) 2만원 → 3만원
지역주민	평일 6만원, 주말·공휴일 9만원	(‘20.12) 주말·공휴일 6만원 → 9만원
비회원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12만원	(‘20.12) 주말·공휴일 8만원 → 12만원

※ 자료: 경찰청

□ 최근 4년간 경찰 체력단련장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은 2020년 15억 6,300백만원, 2021년 23억 5,400만원, 2022년 25억 4,900만원, 2023년 22억 5,300만원으로 코로나19 기간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로 감소하였다가 골프장의 집합제한 예외적 완화 및 골프 인구 유입에 따른 골프 대중화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소폭 감소하였음. 반면, 지출은 2020년 26억 8,600만원, 2021년 24억 5,500만원, 2022년 25억 4,700만원, 2023년 26억 5,1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4년간 경찰 체력단련장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수입			지출(결산)			A-B
	계(A)	용인	아산	계(B)	인건비	운영비	
2020	1,563	974	589	2,909	2,028	881	△1,346
2021	2,354	1,111	1,243	2,455	1,584	871	△101
2022	2,549	1,324	1,225	2,547	1,617	930	2
2023	2,253	1,158	1,095	2,651	1,724	927	△398

주: 2021년부터 운영인력(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은 재정담당과 이관으로 경찰복지증진 예산에 미편성

□ 지출과 수입의 차이인 운영수지를 보면, 수입은 2020년 12월 지역 주민과 비회원의 주말·공휴일 이용요금을 각각 9만원(3만원 인상), 12만원(4만원 인상)으로 인상하면서 코로나 전보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지출은 물가 및 임금인상에 따라 증가하면서 2021년 1억 100만원이었던 적자 규모가 2023년 다시 3억 9,8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런데 공공부문 및 민간 대중제 등 골프장 이용요금과의 격차 및 비이용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및 적정 요금 책정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재의 경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은 다른 공공부문 골프장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함. 경찰 체력단련장은 현직 경찰관 기준 평일, 주말 구분없이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그 격차는 공무원연금공단 골프장과는 주말 기준 4~5배 차이가 나고 민간 골프장과는 8배 이상 차이가 남.

<공공부문 운영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

(단위: 천원)

구 분	공무원		일반인(비회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경찰청 체력단련장(현직)	20	20	80	120
국방부(군) 체력단련장	30~36	30~36	120~161	173~191
공무원연금공단 (상륙) 골프장 ¹⁾	90~100	120~130	110~170	170~200
대중형 골프장 ²⁾	-		137	177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비회원)	-		223	282

주: 1) 천안, 화성 기준

2)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결과 대중형·회원제(비회원 기준) 골프장 성수기 평균 요금

□ 경찰청이 지원하는 체력단련장 이용은 타 체력단련 종목보다 비용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다고 인식되므로 골프를 이용하지 않는 경찰관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적정 요금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늘어난 수입으로 다양한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체력향상이라는 본 사업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국세 수입 제고 측면에서도 인건비 및 공공요금이 증가하면서 운영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요금을 책정하여 운영한다면 운영 적자 및 이용률 감소 없이 세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 경찰청은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행위자 및 소재불명자 증가로 인한 신상정보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인력 확충 및 대면 관리 시 대상자의 수인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 등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용 차량 임차경비 편성 시 수요 관서의 필요 차종 및 기간 등을 면밀히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같이 주된 예산이 과소계상됨으로써 부대 비용인 유류비 등이 불용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피해자) 대상 범죄 수사활동 지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마약류·조직범죄·교통 수사활동 지원 및 공정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현장 수사 장비 운영 등을 추진하여 해당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255억 1,200만원이며, 이 중 95%인 24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200만원(4.9%)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형사·교통·여성 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26,191	26,191	72	△ 750	-	25,513	24,240	-	1,273	24,120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전담여성수사팀 역량강화	5,747	-	-	-	-	5,747	5,574	-	173	3,774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1,739	-	-	-	-	1,739	1,653	-	86	1,720
교통사고조사 운영	7,954		72	△ 750		7,276	6,838		438	1,164
⋮										

※ 자료: 경찰청

□ 동 사업의 주요 이·전용은 내역사업인 교통사고조사 운영사업의 특근매식비(210-05) 비목에서 발생하였는데, 수사지원사업(1231-313)의 예비(220-01)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음.

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점검 체계 구축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내역사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²⁰⁾,

2023년 예산은 17억 3,900만원이며, 이 중 16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1,739	-	-	-	-	1,739	1,653		86	1,720
일반수용비	38	-	-	-	-	38	36		2	38
공공요금	119	-	-	-	-	119	97		22	119
국내여비	1,582	-	-	-	-	1,582	1,520		62	1,563

※ 자료: 경찰청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를 등록·관리해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대상자에게는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효과의 의의가 있음.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공동관리하여 수행²¹⁾하며 이 중 경찰청은 등록대상자 신규·변경 시 신상정보 접수, 사진 촬영, 시스템 입력, 법무부 통보 및 진위 확인과 주기별(연 1회) 대면 점검 등의 등록대상자 관리업무를 담당함²²⁾.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신상정보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으로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21)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관리·종료 업무를, 여성가족부는 등록대상자 공개·고지 업무를, 경찰청은 등록대상자 관리를 담당함

2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해당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등록기간 30년), 6개월(등록기간 20년·15년), 1년(등록기간 10년)의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자 소재 불명 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후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함.

<최근 3년간 신상정보 법률위반·소재불명자 검거 현황>

구 분(명)		'21년	'22년	'23년
등록대상자		91,136	101,071	109,367
법률 위반	신규정보 제출 위반	1,086	1,232	1,398
	변경정보 제출 위반	3,395	3,861	5,017
	사진촬영 위반	159	365	497
	소 계	4,640	5,458	6,912
소재불명자	검거	191	150	162
	미검거	132	105	118
	소계	323	255	280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최근 3년간 등록대상자 추이 및 의무이행 위반자 현황을 보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1,136명, 2022년 101,071명, 2023년 109,367명으로 매년 약 10% 정도 늘어나는 추세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관련 법률 위반자 수도 2021년 4,640명, 2022년 5,458명에서 2023년 6,912명으로 증가(전년 대비 26.3%)하고 있음.

- 2023년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건수 유형을 보면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됐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등의 변경정보 제출 위반 건수가 5,0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72.6%)을 차지하고 있는데, 변경된 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면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범인 추적·검거에 불리하고,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음.
- 이에 대해 경찰청은 매년 관리 대상자가 증가함에도 담당 인력은 2015년 549명(여청수사팀 신설)에서 2023년 기준 251명(여청계 이관)으로 축소되고, 1인이 담당하는 대상자가 441명(2024년 4월 기준)에 달하는 등 인력 부족과 대면 관리 시 대상자 협조·수인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²³⁾.
- 경찰청은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업무를 여청수사팀에서 과거의 여청계로 이관하면서 인력 또한 축소(549명→251명)하였는데 대상자 관리에 공백이 우려되는바,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 수급 방안 및 조직체계 정비안을 마련하고 대면 관리 시 대상자의 수인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만 있고 경찰관이 등록대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목적으로 접촉 시 이에 대한 협조·수인의무와 불응 시 제재 규정이 없음

다. 스토킹범죄수사용 차량 유형별 적정 단가 책정 필요

□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로 수사·처벌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검거건수가 증가(2021년 880건→2023년 11,531건)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도 가능하게 되어 피해자 또는 피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응급·잠정 조치·신변보호 등 조치를 위한 출동·출장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²⁴⁾.

< 스토킹 범죄 발생(접수) 및 검거 현황 >

구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2021년	1,023	880
2022년	10,545	9,895
2023년(잠정)	12,001	11,531

※ 자료: 경찰청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스토킹범죄수사용 차량 임차경비는 스토킹 범죄 수사활동을 위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임차료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00만원을 유류비로 전용하고 예산현액 2억 8,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유류비는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임차료 및 유류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비목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임차료 (210-07)	286	-	-	△1	-	285	285	-	-	1,520
유류비 (210-08)	179	-	-	1	-	180	60	-	120	364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2023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의 임차단가는 351천원의 준중형 차량(아반떼) 기준으로 68대를 편성하고 이후 집행지침에는 시도청별 부족 차량을 책정된 예산비율로 환산해 임차배정 대수를 추산하여, 차량 1대당 임차료 및 유류비를 균등하게 배정(1대당 임차료 420만원, 유류비 260만원)하였으며. 실제 임차기간은 12개월이 아닌 평균 5개월여 정도이고, 짧아진 임차기간으로 유류비는 편성액 1억 8,000만원 중 약 33.3%인 6,000만원만 집행되었음.

<2023년 스토킱범죄수사용차량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구분	편성 내역(백만원)	집행내역(백만원)
스토킱범죄수사용 차량 임차 등	465 - 임차비: 286(68대*351천원*12월) - 유류비: 179(68대*7,218원*31일*12월)	345 - 임차비: 286(68대*838천원*5월) - 유류비: 60(68대*5,785원*31일*5월)

※ 자료: 경찰청

□ 당초 계획보다 임차 기간이 짧아진 이유는, 경찰관서별로 보유 및 필요 차종이 다르고 수사업무의 특성상 카니발, 스타렉스 등 준중형 이상의 차량을 임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편성 단가를 과소계상하여(평균단가 351천원→ 집행단가 838천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됨. 단축된 임차 기간으로 인해 부대비용인 유류비 또한 편성대비 3분의 1 정도만 집행(6,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2023년 스토킱범죄수사용 임차차량 종류 및 현황>

구분	승차정원	임차수량(대)	임차차종
승 용	5인승	54	아반떼 등
	9인승	9	카니발
승 합	12인승	5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 자료: 경찰청

□ 스토킱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대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기동력 확보를 위한 차량

임차료 등의 경비가 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임을 고려할 때, 2022년 사업준비 단계에서 일선 경찰관서의 차종별 보유량과 필요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임차료와 같이 주된 예산이 과소계상되어 부대 비용인 유류비 등이 불용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4년 예산안에는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을 대폭 증액하였으나,

<2024년 스토킹범죄수사용차량 예산편성 내역>

예산편성	2023년(백만원)	2024년(백만원)
스토킹범죄 수사용차량 임차 등	465 - 임차비: 286(68대*351천원*12월) - 유류비: 179(68대*7,218원*31일*12월)	1,884(▲1,419) - 임차비: 1,520(138대*919천원*12월) - 유류비: 364(138대*7,218원*31일*12월)

※ 자료: 경찰청

임차료 및 유류비 등을 일률적으로 12개월로 편성하고, 임차 기간은 24년 4월부터 25년 3월로 1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비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함으로써 차량 임차 시기와 유류비 편성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2024년에도 3개월간의 유류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이 예상됨.

라. 진술분석전문가 활용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진술분석전문가 사업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13세 미만)·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민간전문가에게 진술 내용의 타당성·신빙성 등 의견을 조회하고, 동의견서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²⁵⁾(전문가의 의견조회)를 근거로 하고 있음.

2023년 예산은 12억 9,900만원이며, 이 중 85.0%인 11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최근 3년간 진술분석전문가 관련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불용)	예산액	집행(불용)	예산액	집행(불용)
진술분석전문가 수당 등(210-01)	1,005	997(8)	1,299	1,091(208)	1,299	1,104(195)

※ 자료: 경찰청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 경찰청은 임상·발달·상담·범죄심리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진술분석전문가로 선발·위촉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하여 피해자 행동을 관찰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타당성·신빙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참여수당 집행률이 낮아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참여실적 건수보다 실제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실적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예산 편성시 예상 참여 실적과 실제 진술분석 실적>

(단위: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예산 편성	3,179	3,577	3,772	4,674	4,674
참여 실적	3,984	3,554	3,786	3,563	3,888

※ 자료: 경찰청

2022년부터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대상을 기존 아동(13세 미만)·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2023년 예산편성 시 2020년 아동학대 송치인원 2,027명의 30%를 반영하여 추산하였으나, 2023년 송치인원이 4,06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집행률이 낮은 것은 동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함.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송치인원 및 송치건수>

(단위: 건)

구분	송치 인원(형사사건+보호사건)										
	송치인원 (D=A+B+C)	보호 사건 (A)	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합계 (B)	구 속	불구속	합계 (C)	죄 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19년	5,179	2,209	2,057	132	1,925	913	22	681	165	43	2
'20년	6,164	3,164	2,027 ¹	102	1,925	973	25	751	160	36	1
'21년	12,725	7,749	3,743	196	3,547	1,233	38	1,107	65	22	1
'22년	13,118	7,912	3,471	141	3,330	1,735	35	1,550	105	43	2
'23년	14,354	7,888	4,064	128	3,936	2,402	75	2,164	117	45	1
대비 (%)	9.4	-0.3	17.1	-9.2	18.2	38.4	114.3	39.6	11.4	4.7	-50

주1: 2023년 진술분석지원 예상 실적 4,674인을 산출할 때 2,020년 아동학대 송치인원의 2,027건의 30%인 615명을 반영하여 산출함

※ 자료: 경찰청

□ 이에 대해 경찰청은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²⁶⁾,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참여제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²⁷⁾.

26) 「아동학대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녹화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조력인 △증거보전 특례 등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조문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전문가 의견 조회) 조문은 준용하지 않고 있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27) 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참여 근거 규정 마련, 신규 진술분석전문가를 선발, 전문가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여 '24년부터는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진술분석전문가 연도별 활동 인원>

(단위: 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활동 인원	86	70	73	69	66	74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대상을 아동학대 범죄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법령 미비 등으로 현장에서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에 전문가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 경찰관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전체 피해자 진술분석 지원 건수뿐만 아니라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대상별로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지원 건수를 구분하여 사업성과와 예산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3년 진술분석전문가 선발 공고 인원 및 선발 인원>

(단위: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공고 인원	20	2	1	1	2	2	1	2	2	2	2	1	1	1
지원자수	81	21	5	4	6	4	3	10	2	6	6	6	1	7
선발 인원	8	1	1	0	2	2	0	1	0	0	0	0	1	0

※ 자료: 경찰청

□ 둘째, 진술분석전문가 필요 인원을 원활히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공고인원 20명 대비 실제 선발인원은 8명에 불과함. 진술분석전문가 채용과정이 공고에서 최종 선발까지 비교적 장기인 6개월가량 소요되고 전형절차도 서류심사, 이론교육 및 필기평가(1주일, 합숙), 실무교육 및 의견서 평가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최종 선발까지 장시간의 교육이 필요한 점 등 지원자에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선발절차를 완화하고 선발 후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진술분석전문가 채용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진술분석전문가 선발 전형 과정>

구분	2020년	2023년	비 고
공고일자	6. 12.	6. 22.	
신규추천	7. 10. ~ 7. 15.	7. 10. ~ 7. 21.	
이론교육	8. 10. ~ 8. 14.	7. 31. ~ 8. 11.	교육시간 95% 이수 의무
실무교육	8. 17. ~ 9. 29.	8. 14. ~ 10. 5.	총 40시간 실습
최종심사 및 선발	12. 30.	12. 19.	이론실무 교육(50%) 및 진술분석의견서 평가(50%) 반영

※ 자료: 경찰청

[경비국]

1. 의경대체지원(2131-314)

- 유류비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이 기동대 청사의 난방 방식이 기름보일러에서 전기·가스보일러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난방용 유류의 수요는 감소하고 전기·가스요금 수요가 증가하여 유류비의 집행부진과 공공요금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은 향후 기동대 청사의 난방 방식 변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의경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구축된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이 사업준비 미흡으로 지연되었는데 유지·보수 지연에 따른 경계능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해안감시체계가 구축·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의경대체지원’ 사업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 기동대 창설 및 부대운영, 해안경계시스템 유지보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확충·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691억 8,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3억 8,000만원) 및 이·전용액(△7억 4,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8억 2,100만원, 집행액은 667억 6,500만원(집행률: 95.6%), 이월액은 5억 2,000만원(이월률: 0.7%), 불용액은 25억 3,600만원(불용률: 3.6%)임.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경대체지원	69,184	69,184	1,380	△743	-	69,821	66,765	520	2,536	74,108

※ 자료: 경찰청

나. 유류비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개선 필요

□ 유류비 내역사업은 기동대 청사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름보일러의 연료를 구입하는 사업임. 2023년 경찰청은 등유·경유 등 기름보일러의 연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6억 6,900만원 편성하였으나 1억 3,500만원만 집행하였고 5억 3,4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20.2%에 불과하였음.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집행률은 34.5%, 2022년 집행률은 39.7%에 불과하여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부대운영비 세사업 중 유류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	집행	불용	집행률
2021년	598	207	391	34.5%
2022년	770	306	464	39.7%
2023년	669	135	534	20.2%

※ 자료: 경찰청

□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청은 최근 기름보일러 대신 가스보일러 또는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청사가 증가하였는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되어 이러한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 최근 3년간 전체 기동대 청사의 난방 방식 변화를 살펴보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청사는 총 19개소에서 12개소까지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10개의 청사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동대 청사 온수공급 방식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총계	공공요금		유류비
		도시가스	전기	경유·등유·LPG
2021년	114	72	23	19
2022년	132	90(+18)	28(+5)	14(-5)
2023년	143	101(+11)	30(+2)	12(-2)
2024년	145	103(+2)	32(+2)	10(-2)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기동대 청사의 온수공급 방식을 기름 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전기보일러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중에 있으므로 기름보일러 대신 가스보일러·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청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연례적인 유류비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23년도 동 사업의 공공요금 예산 부족에 따라 7억 8,700만 원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온수공급 방식 변화에 따라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공공요금 예산 부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경찰청은 향후에는 기동대 청사의 난방 및 온수 공급 방식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연료 수요에 맞추어 유류비를 계상하고, 공공요금 예산을 가스보일러·전기보일러 사용 청사 수의 증가에 맞추어 증액 계상하는 등 예산을 적절히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지연 등

□ 경찰청은 의경의 폐지²⁸⁾로 인한 경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해안지역 각 초소에 있는 열영상감시장비(TOD)²⁹⁾,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제·관리하는 통합상황실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는바,

내역사업인 해안경계 임무수행 사업은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편성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600만원을 포함한 61억 3,700만원이며, 이 중 69.3%인 4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억 300만원(4.9%), 불용액은 14억 8,200만원(24.1%)임.

<2023년도 해안경계 임무수행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안경계 임무수행	6,041	6,041	96	-	-	6,137	4,256	303	1,482	6,432

※ 자료: 경찰청

28) 2017년 말 기준 의경 정원 25,911명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3년 최종 폐지됨

29)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열영상감시장비): 적외선을 포착하여 영상으로 바꾸는 장비로, 빛이 전혀 없는 야간에도 사람·물체 감시 가능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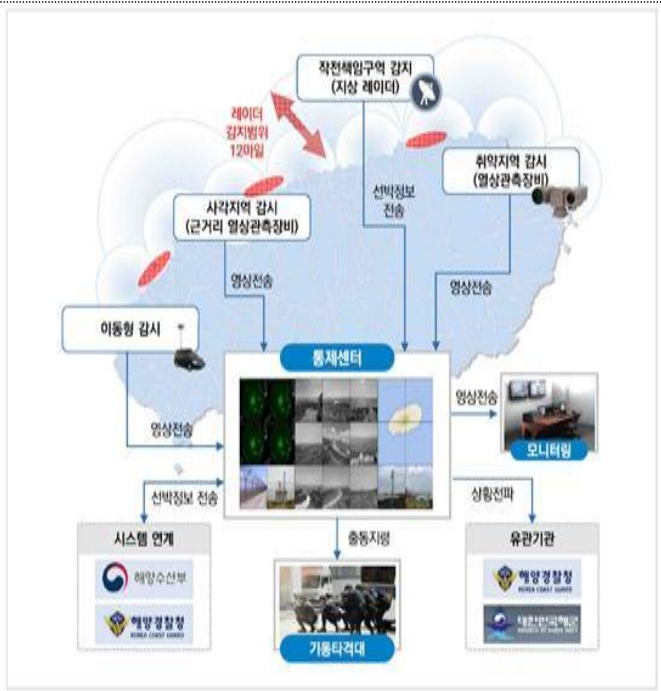
▶ **(추진배경)** 의경 폐지에 따라 인력 위주 해안경계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여 무인TOD초소 신축 및 통합상황실 구축

▶ **(사업기간/예산)**

'19.1월~'21.10월 / 451억

▶ **(주요내용)**

- **(TOD초소 신축)** 제주·울릉·가거 해안에 TOD·CCTV 등으로 구성된 무인초소 신축
- **(통합상황실 구축)** TOD초소에서 관측한 영상을 관제할 수 있는 상황실 구축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세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용역비가 20억 8,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6억 8,200만원만 집행(32.6%)되고 14억 6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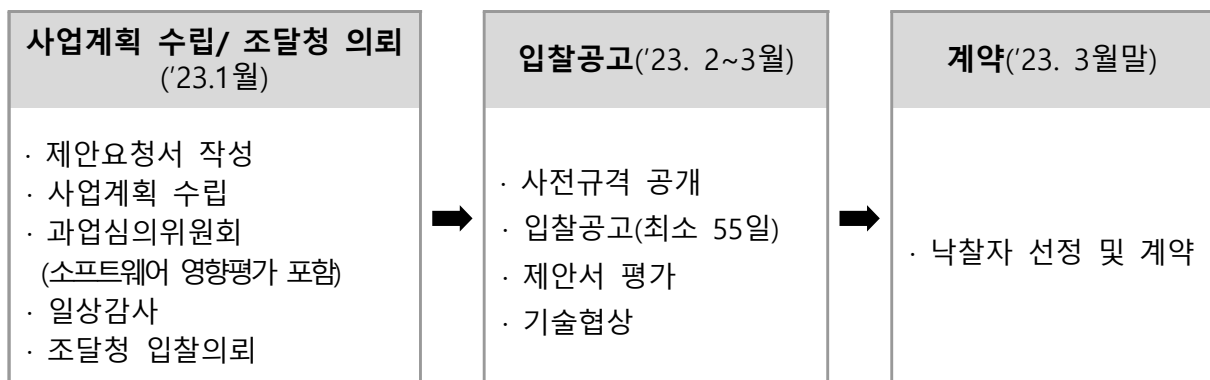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편 성	집 행	불 용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088 • (제주) 1,747 • (경북) 244 • (전남) 97	682 • (제주) 535 • (경북) 100 • (전남) 47	1,406 • (제주) 1,212 • (경북) 144 • (전남) 50

※ 자료: 경찰청

□ 당초 계획을 보면, 경찰청은 2021년 10월 동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무상 품질보증 기간(1년)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스템 SW/HW³⁰⁾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조달청 의뢰(1월), 입찰공고(2~3월), 낙찰자 선정(3월말) 등 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2023년 3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초소별 사업 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이에 따른 공고 시기가 다르고 단일업체 응찰에 따른 유찰(2회)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2023년 10월에야 모든 계약이 체결되었음.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관련 당초 계획>



※ 자료: 경찰청

30) (SW) R/D 및 TOD 영상개선·관리, 선박 데이터 점검·관리, 백신 등
(HW) TOD, CCTV, 시설 보호 펜스 및 TOD설치 철탑 관리 등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관련 추진일정>

구 분	제 주	경 북	전 남
제안요청서 작성	'22. 12. 26.	'23. 4. 20.	'23. 1. 3.
사업계획 수립	'23. 1. 3.	'23. 4. 24.	'23. 1. 3.
과업심의위원회	'23. 2. 24.	'23. 5. 2.	'23. 3. 28.
일상감사 의뢰	'23. 2. 28.	'23. 5. 3.	'23. 2. 22.
일상감사 회신	'23. 3. 8.	'23. 5. 10.	'23. 2. 23.
조달청 의뢰	'23. 3. 22.	'23. 6. 20.	자체 입찰 공고
사전규격공개	'23. 4. 3 ~ 4. 14.	'23. 6. 26. ~ 7. 1.	'23. 4. 18. ~ 4. 23.
1차 입찰 공고기간	'23. 5. 22. ~ 7. 4. / 1차 유찰	'23. 8. 3. ~ 8. 18. / 1차 유찰	'23. 4. 26. ~ 5. 15.
2차 입찰 공고기간	'23. 7. 7. ~ 7. 18. / 2차 유찰	'23. 8. 21. ~ 9. 1. / 2차 유찰	-
제안서 평가	'23. 8. 18.	'23. 9. 27.	'23. 6. 7.
기술 협상	'23. 9. 1.	'23. 10. 12.	-
낙찰자 선정	'23. 9. 7.	'23. 10. 12.	'23. 6. 20.
계 약	'23. 9. 8.	'23. 10. 17.	'23. 6. 21.

※ 자료: 경찰청

□ 이에 대해 경찰청은 동 사업이 기존 제주·경북·전남경찰청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SW/HW 유지보수가 필요한 세부사항 산출 등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어 사업준비에 추가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했고, 주관 경찰청별 계획 수립 기간에 차이가 있어 계약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하지만, 2021년 10월 구축된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에 대한 무상 품질 보증기간이 1년 후 종료될 것은 구축 당시에 이미 예견된 사항으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계약이 지연되었다는 점은 경찰청의 준비 미흡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유지보수 추진 체계상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관리 주체가 제주·경북·전남경찰청으로 각각 달라 소관 경찰청별 사정에 따라 사전준비 기간 및 공고 시기 등이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경찰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해안경계임무 사업 관련하여 경찰청은 2013년부터 제주, 울릉, 가거도 해안경계 ‘고정식 열영상감시장비’(총 65대)의 사각 지역 보강을 위해 차량에 감시장비를 탑재한 ‘열영상감시차량’을 도입(6대)하였는데, 2023년 동 차량의 내용연수(8년)가 경과하여 이 중 2대를 특정 방산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방산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이 불가하게 되었음.

따라서 당초 납품 시일이 지난 2023년 9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입찰에 필요한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예산 15억 1,500만 중 선금금으로 12억 1,200만원(80%)을 회계연도 마감 전 집행하였음.

<차량탐재형 열영상감시장비 구매 계약 관련 추진개요>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계약)	계약번호	39233027900
품 명	차량탐재형 열영상감시장비 구매	계약수량	2대
계약금액	1,514,786,000원	계약일/납품일	'23.12.29. / '24.10.14.
선급금	1,211,828,800원	계약상대자	000

※ 자료: 경찰청

□ 이는 열영상감시차량 교체사업 시 생산업체의 법령 위반 여부, 납품 가능 업체에 대한 시장조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차량 교체가 2024년 10월로 지연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사업과 같이 사업여건의 변화로 회계연도 내에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 다음연도 예산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의경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구축된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안 경비 태세가 소홀해질 수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지연에 따른 경계능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생산업체의 법령 위반 여부, 납품 가능 업체에 대한 시장조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토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대테러상황관리(3134-311)

- 경찰청은 관련 법령의 미숙지로 인해 건설 사업 중단·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고가의 작전·특수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차고지 설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테러상황관리’ 사업은 전국 18개 특공대의 각종 테러 사건의 예방·진압을 위한 훈련 및 작전장비 구입 등 대테러작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부터 경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339억 8,400만원이며 이 중 333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98.2%), 5억 9,100만원을 불용함(불용률: 1.7%).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테러 상황관리	33,984	33,984	-	-	-	33,984	33,393	-	591	32,347

※ 자료: 경찰청

나. 제주특공대 차고지 설치 공사 관련 사업관리 강화

- 대테러상황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특공대운영비 사업) 중 제주특공대 차고지 설치사업은 제주경찰청 소속 특공대가 보유한 차량(총 13대)을 제주도의 고온, 해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전용 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노후 청사 및 보수공사비로 편성된 예산 10억 1,000만원 중 총 공사비로 1억 1,900만원(공사비 114백만원, 실시설계비 5백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그런데, 공사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9,900만원을 차고지 건립이 아닌 2023년 8월 창설예정인 3개 특공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부족 예산을 충당할 목적으로 조정하였음.

<제주특공대 차고지 공사비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제주특공대 차고지(~에서)		금액	특공대 임시청사 리모델링(~으로)		조정 사유
	세부사업 명 (코드번호)	세목 (코드번호)		세목 코드번호)	금액	
세목조정 (2023.2.)	대테러상황관리 (3134-311)	공사비 (420-03)	△99	실시설계비 (420-02)	63	특공대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충당
				감 리 비 (420-04)	24	
				시설부대비 (420-05)	12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예산편성 당시, 임시 가설건축 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발주 검토 과정에서 제주특공대가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산간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H빔 구조의 차고지 설치로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였음. 그런데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는 ‘리모델링’ 행위에 해당하여 경찰청 일반회계가 아닌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고³¹⁾, 증축 관련 지자체 인허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1월 결국 공사계획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은 지방경찰청 3개 특공대(울산·강원·충북)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정하였음

□ 동 차고지 건립 중지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경찰특공대 특수차량 차고지 증축은 2022년도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계획·편성된 사업으로 고가의 특수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 비추었을 때 실제 공사 착수 전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우선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며,

31) 「국유재산법」 제57조(개발)

-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건축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방식, 인허가 여부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하나, 해당 사업에서는 국유재산법, 건축법 등 차고지 건립에 필요한 법령 검토 및 사전 계획 수립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됨.

둘째, 중지된 공사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신규 특공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비목조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당초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규 특공대 설치 공사비를 초과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차고지 증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차량 부식 등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바, 경찰청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국유재산 기금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중기사업 계획 수립 시 예산·사업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및 예산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 경찰병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 및 소방관에 대한 진료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기관임. 경찰병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연간 진료 환자 수를 회복하고 나아가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은 경찰병원의 입원·외래환자에 대한 진료수입 및 제증명료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 항목으로 2023년도에는 327억 9,9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음. 그 중 징수결정액은 295억 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4억 9,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89.9%임.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32,799	32,799	-	32,799	29,519	29,499	20	-	31,700

※ 자료: 경찰청

나. 운영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동 사업에 대한 최근 4년간의 수납률 추이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100%를 초과하는 수납률을 달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수납률이 89.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예산액(a)	세입액(b)	증감(b-a)	수납률(b/a)
2020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8,192	31,154	2,962	110.5
	- 진료수입 등		29,951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2,031		
2021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30,220	39,346	9,126	130.2
	- 진료수입 등		26,964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2,383		
2022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30,746	32,778	2,032	106.6
	- 진료수입 등		26,880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598		
2023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32,799	29,499	△3,400	89.9
	- 진료수입 등		28,246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253		

※ 자료: 경찰병원

- 이는 경찰병원의 진료수입 등은 2022년 268억 8,000만원에서 2023년 282억 4,600만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전체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이 감소한 결과임.

□ 경찰병원은 이에 대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아 사업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에는 손실보상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입이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환자수가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코로나19 이전대비 공공병원 환자수 회복 정도>

(단위: 명, %)

구분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코로나19이전 (2019년)	398,979	435,249	285,000	138,533	250,320
코로나19이후 (2023년)	328,160	372,438	198,000	66,227	137,523
환자 회복률	82.2%	85.6%	69.5%	44.7%	54.9%

※ 자료: 경찰병원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타 병원으로 소개된 일반환자들이 특별한 유인이 없는 한 수년간 이용하던 병원을 다시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일반환자의 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3년 진료 환자 수는 목표치 대비 90.2%를 달성하였고, 일반환자를 제외한 경찰공무원 등(경찰·소방·퇴직경찰·퇴직경찰)의 환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타 공공병원과 비교하여도 경찰병원의 환자 수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임.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분별 진료 실적>

(단위: 명, %)

구분		계	경찰	소방	퇴직경찰	퇴직소방	일반
환자 회복율	계	82.2%	98.3%	109.6%	105.8%	145.4%	70.7%
2019년	계	398,979	113,628	9,019	83,422	3,405	159,476
	외래	333,476	106,034	8,748	77,833	3,332	120,531
	입원	65,503	7,594	271	5,589	73	38,945
2023년	계	328,160	111,719	9,884	88,235	4,951	112,734
	외래	295,963	106,831	9,560	82,766	4,885	91,533
	입원	32,197	4,888	324	5,469	66	21,201

※ 자료: 경찰병원

□ 그러나 2023년 경찰병원은 32만 8,160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연간 진료 환자 수인 39만 8,979명 대비 82.2% 수준으로밖에 회복하지 못하였고, 2023년도 병상 가동률은 43.6%에 불과하여 최근 5년간 평균 병상 가동률인 53.3%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찰병원 병상 가동률>

(단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병상가동율	57.7	52.7	61.8	50.5	43.6

※ 병상 가동률 = 입원환자수 / 연평균 가동병상수 × 100

※ 자료: 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입수 납액 부족이 발생하면 당해연도 세출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병원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경찰병원은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 진료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기관임.
- 그러므로 경찰병원은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간 일반환자 진료 실적과 병상가동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운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